

# 나눔터

2002 · 겨울

제43호



- 02 ● 사업계획 | 2003년 사업목표 및 사업계획
- 03 ● 여는 말 | 새해를 열며
- 04 ● 여기는 상담실 | 상담에 나타난 성폭력피해자의 성적 후유증
- 08 ● 나눔터 기획 || Survivors - 성폭력 후유증 치유과정에서 그녀들이 하고 싶은 말
- 14 ● 나눔터 기획 || 만화- 인어의 소풍
- 16 ● 나눔터 기획 III | 성적 후유증의 치유 방안
- 20 ● 학술 || 성별화된 폭력으로서의 스토킹 연구
- 24 ● 학술 II | 스토킹관련 정책 현황
- 28 ● 학술 III | 번역: 미국내의 스토킹에 대한 연구 조사
- 32 ● 성폭력뿌리채흔들기 || 인터넷을 이용한 성폭력 상담의 과제  
- 성폭력상담원을 중심으로 -
- 34 ● 성폭력뿌리채흔들기 II | 여성폭력정책 관련 법률적용 문제
- 38 ● 세태진단 | 성차별 만연한 사회비판/ 행동실천
- 40 ● 당신을 만나는 기쁨 || 열림터 식구의 하루
- 41 ● 당신을 만나는 기쁨 II | 일산에서
- 43 ● 이런 일을 했습니다
- 44 ● 회원동정 | 신간 비디오 소개
- 46 ● 아낌없이 주는 나무



한국  
여성  
성폭력  
상담소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6-24 2층 • 사무전화 (02)338-2890~2 • 팩스 (02)338-7122 • E-Mail : ksvrc@korea.com
- 상담 : 열린터 입소문의 (02)338-5801~2 • 인터넷상담 : ksvrc@chol.com • 홈페이지 : http://www.sisters.or.kr



**포지그림 :** 지난 10월 11일에 합정동 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초창기부터 열심히 활동해 주셨던 상담원 선생님, 자문위원, 전상근자 등 여러 식구들이 모여서 신임 이미경 소장, 장윤경 부소장을 선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2003년에도 모든 회원, 후원회원님과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 2003년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 1. 성폭력 피해 생존자 권리 찾기 운동

- 1) 성폭력 관련법 판결 감시
- 2) 생존자 커뮤니티 활성화
- 3) 진료, 보도 과정에서의 2차 피해 근절 사업
- 4) 피해자 권리 현장 다시 쓰기

### 2. 성문화 바꾸기 운동

- 1) 가해자 되지 않기 캠페인
- 2) 법조인 성인식 조사, 연구
- 3) 성폭력 관련 용어 바로 쓰기 캠페인
- 4) 안티 55 사이즈 캠페인

### 3. 여성주의 상담 지원체계 강화

- 1) 의료, 경찰 지원 연계망 구축
- 2) 상담원 심화 교육 활성화
- 3) 열린터 입소자 지원 활성화

### 4. 성폭력 관련 법, 제도개선 운동

- 1) 성폭력 정책 감시 활동
- 2) 성폭력 특별법 개정 운동
- 3) 스토킹 관련법 제정 추진 운동

### 5. 사람 중심의 운동 문화 만들기

### 6. 재정 자립 기반 마련



## 새해에는 더욱 진정한 사회의 맥박으로,

## 성폭력피해 생존자의 든든한 지지자로!

2003년은 우리 상담소가 만 12돌을 맞는 해입니다. 그동안 많 은 분들이 열정을 갖고 함께 해오신 덕에 3만 8천여회 상 담을 통한 성폭력피해 생존자 지원과,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 들기 위한 다양한 성문화 바꾸기 운동들을 펼쳐올 수 있었습 니다. 더욱이 작년에는 합정동의 아담한 주택에 새로운 터를 마련하였습니다. 상담소 초기 7.5평의 작은 공간을 생각하면 감회가 새롭고, 앞으로는 이를 기반으로 더욱 열심히 활동해 갈 것을 다짐하곤 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이미경(본 상담소 소장)

2003년 상담소는 우리사회의 맥박인 NGO로서 여성인권운동을 펼쳐 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먼저, 성폭력피해 생존자들의 권리 찾기 운동으로 이들이 갖고있는 치유에의 용기와 힘을 지지하며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되찾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성폭력을 예방하고 근본적으로 뿌리뽑고자 우리사회의 잘못된 성문화 바꾸기 운동을 지속해가겠습니다. 셋째, 여성주의 상담 지원체계를 강화해 성폭력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 구조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통합적인 내담자 지원을 해가고자 합니다. 특히 피해 생존자 보호시설인 열림터의 입 소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마련해가고자 합니다. 넷째, 성폭력 관련 법·제도개선 운동으로 성폭력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의 감수성을 갖고 실제적인 정책제언을 하는 역할을 해가겠습니다. 다섯째, 사람중심의 운동문화를 만들기 위해 상담소의 온 식구가 이 운동의 의의와 보람, 사명감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GO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재정 자립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본 상담소와 부설 열림터,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의 활동가들이 내년 한해도 최선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일해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성폭력피해 생존자들의 든든한 지지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성문화를 바꿔 가는 여성운동단체라는 정체성이 우리 상담소 활동의 근본임을 늘 깊이 새기겠습니다. 2003년에도 많은 분들이 상담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 상담에 나타난 성폭력피해 생존자의 성적 후유증

◆ 조중신 (본 상담소 상담 전문위원)

**영**희 엄마가 상담소에 찾아왔을 때는 28세였다. 영희 엄마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 터 중학교 2학년까지 친아버지에게 피해를 당하였다. 아버지는 늘 술에 절어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렸고, 가족들이 논일을 하러나간 사이 어린 딸을 유린하곤 하였다. 엄마는 이를 눈치 챈 것 같은데도 제지를 해주지 않았다. 결국 지옥 같은 집을 탈출하여 중 2때 가출을 하였다.

사랑과 양육, 보호를 해주어야 할 가족에게서 유린당한 그녀에게는 늘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해줄 대상에 대한 갈구가 있었다.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남자, 이상적인 대상을 찾아 여러 명의 남자를 만났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그녀에게 상처를 준다고 생각되었다. 22살에 임신을 하게 되어 동거를 시작하였고 딸 둘을 두고 있지만 남편과는 뭔가 자꾸 엇갈리는 것 같이 빼꺽거렸다.

남편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고 있으며 그녀도 남편이 좋고 의지가 된다. 그런 데도 결혼한 지 6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남편과의 성관계는 힘들다. 그녀는 성관계 때마다 극심한 통증으로 견딜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남편은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며 화를 내고 그때마다 격렬한 싸움이 이어졌다.

상담하면서 성교통증 때문에 산부인과 진단을 받도록 했는데 신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아무래도 심리적인 것 같다고 여겨져서 성치료전문 정신과 의사에게 연계하였으나 두 번 다녀온 후 남자의사라しさ며 중단을 하였다.

그녀와의 상담은 3년 동안 이어졌다. 어린 딸들을 데리고 상담소로 자주 올 수 없을 때에는 편지로 심정을 적어 보내고 전화로 이에 대한 피드백을 하기도 하였다. 그녀는 비록 정규교육을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대하여 예민하게 자각하였고 솔직하고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는 영민함이 있었다.

그동안 자신의 생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으로 또는 장애로 자책하고 고민해왔는데 상담과정에서 자신의 문제가 성폭력피해와 학대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 남편과의 성관계 때마다 아버지가 만지라고 했던

팔뚝만한 아버지의 성기가 떠올랐고, 술에 절은 호흡이 느껴져서 몸서리치면서 몸이 싸늘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낀다고 했다. 남편에게는 차마 이야기할 수 없는 사연이라 이 평계, 저 평계를 대면서 성관계를 피하게 되었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부인에게 화난 남편은 더욱 강압적으로 덤벼들었고 그럴 때마다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고 했다.

화내는 남편의 모습을 볼 때마다 폭력적인 아버지가 떠오르고 그 분노까지 치솟아 가구를 부수고 아이를 내던지고 발작하듯 악을 쓰는 등 통제할 수 없는 폭력성이 나타난다는 것도 인식하게 되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을 되짚어보면서 그녀는 용암처럼 터져 나오는 분노에 전율하였다.

상담과정에서 더 이상 터트릴 울음이 없을 정도로 이야기가 계속되었고 보내온 편지가 백 수십 통에 달했을 때 그녀의 생활에 변화가 조금씩 보였다. 기억 속의 아버지와 현실의 남편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감정을 경계지울 수 있게 되었다.

남편의 성급하고 일방적인 성적 접촉에 대하여 솔직하게 기분을 전달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애무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었고, 죄책감 없이 성적 쾌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변화하는 아내에 대한 의아심으로 아내가 상담받는 것을 꺼려하는 남편의 반대에 부딪치기도 하였지만 사이가 좋아진 후 못 올린 결혼식을 근사하게 올리고 사진을 보내왔다.



예상치 않았던, 원치 않는, 거부하고 저항하였음에도 강제로 겪은 성적 접촉으로 인하여 성폭력피해 생존자는 광범위한 후유증을 가지게 된다. 피해의 유형, 피해 시의 연령, 성별, 가해자와의 관계, 지속여부 등 여러 변수가 다양하게 작용되며, 정서적 영역, 인지적 영역, 사회적 영역, 신체적 영역, 성적인 영역에서 후유증을 나타내게 된다. 성적인 영역의 후유증은 다른 후유증과 연결되어 있다.

인간은 출생 시부터 공격 본능과 성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며, 성장하면서 주변의 영향을 받아 현실에 맞게 조절하여 표현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 또한 긍정적인 성정체감을 형성하고 바람직한 성 역할과 함께 성인이 되어 건전한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정신적 발달의 중요한 과제이다.

기본적인 인격 형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본능에 대한 조절능력이 미숙한 아동이 심각한 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공격적인 본능을 조절하는 능력이 상실되거나 발달이 지연되어 성장 후에도 폭력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 되기 쉬우며 세상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나쁜 이미지를 가지게 되고 자신감이 상실되기 쉽다.

만성적인 성폭행을 당한 아동들이 성폭력에 의해 괴로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것에 집착하고 성적인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들의 정신성적인 발달에 손상을 입었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즉 성에 대한 갈등이 무의식적으로 남아 끊임없이 정신적으로 괴롭히기 때문에 성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과도한 집착을 보이는 것이다(신의진, 2002).

본 상담소의 성폭력피해 생존자 상담과정에서 성적 영역의 후유증은 다음과 같이 보여지고 있다.



- 1) 성에 대한 혐오감, 거부감으로 이성을 기피하고 결혼을 거부한다.
- 2) 순결상실에 대한 죄책감으로 처녀막 재생수술에 집착한다.
- 3) 성병이나 에이즈, 임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노심초사한다.
- 4) 실제로 임신 및 출산, 입양, 낙태과정으로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겪는다.
- 5) 남자친구나 남편이 눈치챌까봐 전전긍긍하고 불안감으로 성행위를 기피한다.
- 6) 피해당시의 기억으로 특정 성행위 기피, 성행위 중의 불안, 공포, 불감증, 성교통증을 호소한다.
- 7) 친근감을 성적인 행동으로 표현하거나, 성적으로 유혹적인 행동을 보인다.
- 8) 다른 사람, 특히 나이어린 대상에게 가학적인 행동을 한다.
- 9) 장기적인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여 일회성의 강박적인 성관계를 추구, 이성편력을 되풀이한다.
- 10) 성적 폐감에 대한 죄의식으로 괴로워한다. 남성피해자는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성적인 느낌을 경험하기도 하므로 신체에 대한 혼돈감을 느끼기도 한다.
- 11) 어린이 피해자인 경우 과도한 성적 호기심과 과도한 자위행위를 한다.
- 12)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상대나 상황에 처해 상처받는 일을 되풀이한다.
- 13) 성폭력 당시의 성행위가 내면화되어 가학적인 상상을 통해 성적으로 흥분된다.
- 14) 남성을 혐오, 기피하면서 여성과 감정적, 성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기도 한다.
- 15) 남성피해자는 상처받은 남성성을 과시하려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 16) 어른 여성에 의한 성피해 때문에 성인여성에 대한 발기부전, 노출증, 소아기호증, 물품음란증 등의 성도착 증세를 호소한다.
- 17) 피해를 당한 성적 부위에 대하여 과민해져서 '그 부위가 썩는다', '썩는 냄새가 난다', '그 안에 무언가 들어있다'는 느낌을 호소한다.
- 18) 남자 가족들이 자녀에게 스킨쉽을 하는 것에 과잉 반응한다.

성폭력피해 생존자의 성적 후유증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대하여 성신여대 심리건강연구소 이영이 교수의 페미니즘적 게슈탈트 치료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성은 우리의 신체적 자기 기능에 통합될 수도 있고 자신의 것이 아닌 것으로 부인될 수도 있다. 근친강간이나 성폭력의 경험은 성적 자기(the sexual self)를 자아가 아닌 대상으로 느끼게 한다. 불결하거나 혐오스럽거나 거부 받거나 공포를 느끼는 것은 자신의 일부가 될 수 없다. 이를 통찰하는 과정 없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자신이 더럽고 불결하다는 감정을 지속적으로 느껴야함을 의미한다. 몸과 마음의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인된 측면을 자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이영이 2002)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페미니즘적 게슈탈트 치료를 보면 우선 성폭력 경험이 사실로서 체

험되어야 한다. 억압된 성폭력 경험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받으면서, 피해자는 자신의 외상적 경험을 인식하고 지금까지도 외시되었던 자기를 통합하여 전체적으로 느끼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고 해결하면 피해자는 자신에게 반전되었던 적대감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한 책임을 가해자에게 돌릴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동시에 삶의 의욕과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다음 단계로 성(sexuality)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파트너를 향한 사회적 성과 신체의 불안 감소를 위한 외상적 성을 구분하고 자신의 피해자적인 성의 측면이 폭력 경험의 결과이며 원인이 아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치료자는 내담자의 내적 안정감과 자기 지지능력이 충분한 지 주의하며 내담자의 속도에 따라야 한다.

이후에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정체감을 찾기 위해서 인지 행동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피해자의 외상에 따른 장애는 내용적으로 다루어지고 불안감소 훈련으로 내담자가 불안 없이 성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새로운 성적 자아상에 대해서 편안할 수 있으면 파트너와의 훈련을 통해서 두 사람의 성적 욕구와 경계를 다룬다.

심리상담 및 치료 장면에서 내담자는 상담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자유롭게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배우게 된다. 치료관계를 통해서 내담자는 진정한 사랑을 위해 장애가 되는 자신의 행동 패턴을 자각하고 타인을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된다. 성적 의무감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내담자는 더욱 즐거워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



출처-[www.hrc.co.nz/index.php?p=23948](http://www.hrc.co.nz/index.php?p=23948)

## 참고자료

채규만(2000) 「성피해 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신의진(2002) “아동성폭력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 및 정신과적 대처방안”, 아동성폭행의 실태와 대책 심포지움 자료집, 아동성폭력피해자기족모임

이영이(2002) “성의 게슈탈트, 자각과 접촉의 프로세스”, 제3회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가톨릭대 심리상담대학원

※ 조중신님은 40대 초에 1기 상담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이제 50대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피해자 지원상담과 여성운동을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 고민하며 일해왔다. 10년 이상 열심히 일했으므로 소진된 감수성도 회복하고, 재충전하고자 2003년 2월부터 6개월동안 안식년에 들어갈 예정이다.

## Survivors - 성폭력 후유증 치유과정에서 그녀들이 하고 싶은 말

나눔터 좌담<sup>1)</sup>

● 일 시 : 2002년 11월 15일 밤 8시~11시

● 장 소 : 본상담소

● 참여자 : 수정, 오펠, 진주

### “나는 좀더 강한 불꽃을 내는 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오펠: 나는 요즘 많이 편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어. 예전에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눈도 매섭게 하고, 다가오면 다 죽여버린다 하는 그런 표정. 건드리기만 해봐라... 남자들도 굉장히 무섭게 생각했어. 어떤 일을 겪으면서 이제 내 스스로가 치유하고 성폭력에 매달리는 게 어느 순간 지긋지긋해지면서, 이제 지겨워지는 걸 겪은 거야.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는 편해졌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

... 예전에는 기억상실증처럼 기억을 못했고,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특강을 듣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성폭력 당했다는 걸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거야. 그 때부터 ‘아. 성폭력을 당당하게 인정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때부터 내 경험을 인정하게 됐지. 그전까지는 혼자 비밀로 생각하고, 스스로를 더럽다고 생각했었어. 다른 부분은 솔직해도 그 부분은 얘기 안하고. 근데 그 이후부터는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이야기했어. 난 그게 내 치유의 시작이라고 생각해.

대학 3학년 때 휴학하고 집에서 나와 살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치유를 시작한 거야. 그전까

1) “치유 과정에서 그녀들이 하고 싶은 말” - 나눔터 편집부에서는 스스로의 치유과정을 통해 많은 얘길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 오랜 과정을 거쳐 이제는 타인들에게 힘찬 손을 내밀어 힘이 되어주는 그녀들의 얘길 들어보았습니다. 귀중한 얘기들이 너무 많았지만, 지면관계상 모두 실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 수정 - 소중한 몸, 성들 위해 이제라도 시간을 아끼지 않겠다는 멋진 여자입니다.

\* 오펠 - 그녀는 얘기합니다. “상담소에서는 피해사실이 경험을 넘어 경력이야!!” . . .

\* 진주 - “조개를 진주로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여인” 자신을 사랑하는 그녀가 아름답습니다.

지는, 계속 친오빠랑 살아야 했으니까 치유를 할 수 없었고, 치유를 하려면 기억을 떠올려야하는데 계속 오빠를 떠올려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

책을 읽으면서 알게된 여러 가지 방법 있잖아. 기억해내는 것, 자기 스스로 기억해서 글로 쓰는 것. 그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시도를 못했다가 나와 살면서 기억을 떠올리며 글을 썼어. 처음에는 가위 눌리기도 하고 많이 힘들었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막히더라구. 그러면서 상담소에서 쓴 친족 피해에 관한 책도 읽고, 집단상담도 참여하고. 주로 혼자 많이 싸워왔던 거 같애.

**진주**: 나는 워낙에 성격이 밝은데, 아빠한테 당하는 동안에는 말 한마디도 안했어. 사람들이 나보고 벙어리인줄 알 정도로... 그러다가 집에서 나오면서부터는 내 밝음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애. 그렇다고 내 상처에 대해 잘 이야기도 안했지만. 내 경우에는 자살시도도 했었고. 상담하면서 '나 정상이에요?'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힘들어 할 수 있는게 건강한 거라는 걸 알게됐어. 언젠가부터는 아주 친한 사이라고 생각하면 얘기를 했어.

내 경우엔 악몽을 많이 꿨는데, 대학 다닐 때 한번 악몽을 꾸면 삶이 몇 개월이 무너져. 학교도 안가고, 비라도 오면 완전히 다운 돼서 약속도 다 취소하고.... 사람들은 내가 이상하다, 괴짜하다 생각했어. 아빠에 대한 적대감이 사방으로 표출되었고...

그러다 나중에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만난테 도움이 되었던 거 같애. '아, 남자도 좋은 사람이 있구나.' 라고 느끼게 해준 게 신부님, 나를 도와주었던 남자 후배들, 친구들... 그런 사람들을 오랜 기간 만나고 나서야 남자가 다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 같애. 지금도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도 아직... 그래도 예전에는 후유증 간격이 삼 사일만에 왔어. 삼 사일만에 한번씩 미친 사람처럼 확 도는 거야... 그 때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때 그 사람이 '너 참 신기하다. 어떻게 며칠만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니' 고 했었어. 그래서 그때는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어쩌다가 몇 개월에 한번씩 꿈을 꿔. 예전에는 피해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소중한 사람을 괴롭히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반응을 보고 화가 나고 그랬을 텐데, 화를 내고 나서도 예전에는 그런 내 모습을 많이 후회했을 텐데, 요즘에는 다시 전화오면 화를 낸 부분에 대해선 '미안해' 그렇게 하지. 예전 같으면 난 역시 안돼... 라고 했을텐데..

**수정**: 분노표출을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 건가?

**진주**: 그냥 보통사람도 다 화를 내니까... 근데 나는 좀더 강한 불꽃을 내는 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제는 좀 알 것 같애. 내가 원하는지 아닌지. 그래서 상대방이 원한다고 해도 아니라고 말하게되고.”**

**수정**: 난 피해에 대한 기억을 나중에 하게 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거 같애. 뭔가 용어리가 있는데 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야하나? 피해경험이 성 가치관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 때 성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진 것에 대해 죄의식을 가졌었어.

오펠: 음. 스스로가 더럽다는 생각도 들고.

수정: 그렇지.

오펠: 난 내 몸을 싫어했던 거 같아. 그래서 한동안 목욕도 안하고, 일부러 더럽고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기도 했어. 지금도 입술을 뜯는 버릇이 있는데 내가 구강성교를 강요당한 경험 때문에, 그걸 경멸해서 그런 거 같애. 그 상황에서 말로는 못하고.

진주: 나도 토했던 것 같고 그랬어. 아빠가 '내꺼가 드려워?' 이렇게 말하면서 때리고 그랬거든. 근데 그렇다는 표현은 못하고.

오펠: 나도 오빠한테 그 표현을 못한 거야. 그래서 입술 뜯는 행동을 계속하거든. 특히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진주: 나는 생쌀, 딱딱한 거를 많이 먹는데...

오펠: 나는 입술 뜯고, 종이 찢고. 지금은 덜한데, 그래도 여전히 입술 뜯는 게 너무 심하고 내 몸을 학대하는 경향이 있어. 머리 잡아뜯고, 입술 뜯고, 안 씻고 이런 게 생기더라고.

식구들, 남편도 내가 입술 뜯는 이유를 아니까 다들 말려. 그래서 좀 줄어들기도 했고. 머리 뜯고, 안 씻고 그런 걸 보면 내 스스로도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해. 일부러 그 생각이 들면 시간을 내서 내 발을 좋은 클렌징 크림으로 소중하게 닦아, 말을 하면서. 안 좋은 생각이 많이 들면 일부러 목욕을 하지. 괴롭히는 내가 있다면, 나를 이해해주는 내가 또 있는거야.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지 않는 거 같애.

분노나 감정을 순간순간 못 느끼는 것도 후유증 중 하나인 거 같애. 처음엔 6개월이었다가 이제는 하루로 짧아졌어. 분노표출이 늦기는 하지만 하루 지나면 이제는 막 표출할 수 있는 거지. '화내지 않는' '나' 와 '화내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있어서 지금은 그 양쪽간의 조절이 가능한 상태인 거 같애.

진주: 처음에 만났던 사람이 하던 말이 키스를 할 때 내가 입을 꽉 다문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그러는 게 싫어서 입을 꽉 다물었거든.

그리고, 나는 성적 의사표현을 절대 먼저 하지 않아. 어떤 것도. 그렇게 해야 내가 성적으로 잘 모르는 여자같이 보이고, 내가 성을 싫어했다라는 느낌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절대 먼저 하지 않았어.

오펠: 나는 내가 섹스를 원하는지 아닌지 모르는 거. 내가 성적인 걸 강요당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당연히 준비되어야 할 존재로 생각했던 거. 남자가 원하면 당연히, 무의식중에 당연히 응해야 되는 걸로 생각했었어. 끊임없이 나 자신한테 물어봐. 내가 이걸 진짜 원하는 건지. 그러면서 이제는 좀 알 것 같애. 내가 원하는지 아닌지. 그래서 상대방이 원한다고 해도 아니라고 말하게 되고.

수정: 나 같은 경우는, 이게 후유증인지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스스로 몸을 만진다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많이 느꼈고, 최근에는 이게 나의 하나의 패턴인 것 같기도 해. 근데 어쩌면 이게 나를 대상화시키는 게 아닌가 할 때도 있어.

**진주**: 난 자기 자신을 좋아한다는 걸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픸**: 나는 자위를 하게 될 때 싫었던 게, 내가 여자 입장이 아니라 남자 입장이 되어 나를 용시한다는 거야. 전에는 그 점을 인정 안 했는데, 내가 남자 코드에 너무 맞춰져 있다는 걸 스스로 느껴.

어떻게 보면, 성적 권력이라는 게 남성에게 더 있다는 점 때문에 나 스스로를 거기에 감정이입하는 거 같아. 20살에서 22살까지 나를 남자로 보는 친구가 많았어. 준남성이었다고 할 수 있을텐데. 여자처럼 보이는 걸 싫어했어. 내가 여자인 게 여자 몸인 게 싫었어.

### ◉ “치유... 그 오랜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오픸**: 치유... 그 오랜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일단 생존자들에게 추천하는 방법들이 있잖아. 기억해내고, 적고, 내 몸을 사랑해주고, 그런 것들. 나 자신에게 선물도 하고, 피해당시의 내 어릴 적 나를 사랑해주고. 그 애(어릴적 나) 하소연을 내가 듣고. 그런 작업들을 했어.

어릴 때 하지 못했던 어떤 게 있어. 집이 가난하고 아빠가 노름을 해서 인형을 받아본 적이 한번도 없는 거야. 치유작업을 하면서 어릴 적 내 자신이 보였던 거 같애. 그래서 그 이후 2~3년간은 유치하게 놀았어. 꼼 인형 같은 거, 친구가 생일 선물 물어보면 마흔 인형 선물해달라고 해서 받고. 그 때 못해봤던 거, 내 자신이 유치하다고 억눌러버렸던 걸 한 거지.

어릴 적 아이로 돌아가서 그 애가 하고 싶었던 걸 해주고. 그게 참 좋았던 거 같애. 한참 그렇게 하고 하니까 이제 만족이 되었다고 해야 하나? 꼼 인형도 그런 의미였어...

...내가 오빠라는 사람은 싫어했지만,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선 사랑을 받고 싶어했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 ‘강해져야 한다’,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압박이 사라지더라고. 타인의 고통을 바라볼 때도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사람은 그 사람 뜻이 있고 나는 내 고통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

지금도 어떻게 보면 치료 과정이라고 생각해.

**수정**: 주변에 애인이 같이 있어서 치유가 더 빨랐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나?

**오픸**: 그렇지는 않아. 나는 그런 걸 느껴. 결정적인 치유의 뜻은 정말 자기 혼자만의 뜻이라는 걸. 이 사람이 아무리 날 사랑해주고, 아껴줘도 내가 내 어릴 적 아이를 사랑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는 거 같애. 그리고, 어느 정도 누군가가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힘은 돼..... 그런데서 오는 자신감도 있어. 내가 누군가로부터 내 몸을 부정당해서 나도 내 몸을 싫어했는데 이 사람이 내 몸을 되게 이해하니까 거기서 오는 자신감도 좀 있는 거 같애.

**진주**: 나는... 어떻게 말을 해야하지... 일단은 상담기관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어. 변호사님, 보호시설, 집단 상담...

가장 직접적인 도움을 느꼈을 때는 ‘아 나뿐만이 아니구나’ 를 알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그 때부터는 쉽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것 같애. 상담소에 오면 일단은 내가 답답한 것, 성적인 부분에 있

어서의 문제나 힘든 점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이 되었으니까.

**오펠:** 내가 평범한 인간인 것 같으니까...

**진주:** 그리고 내 생각 자체가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은 지지를 많이 해주었어. 정말 자랑스럽다는 표현도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나보고 대단하다고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었거든. 아빠도 '이 더러운 년아' 이러구. 깎아 뭉개고 그랬는데, 지지해주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 그 상황에서 이만큼 버텨왔으면 잘 한 거구나'라는 어떤 자부심, 자존감이 되게 높아졌어.

... 신과의 화해도 중요했지만 제일은 남자들, 남·자·들... 남자는 저쪽, 여자는 이쪽. 나는 이쪽. 그렇게 살아오다가 조금씩 융화가 되는 거. 몇 차례 사귀는 경험을 거치면서 '아, 남자는 의지 할 존재가 아니다'라는 게 확실해진 것 같애. 그러면서 내가 사랑해주기를 바라는 존재만이 아니라 사랑이 오갈 수 있는 존재라는 느낌.

... 아빠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아빠라고 안 했어. 그 새끼, 나쁜 놈 이런 식으로 했는데... 친유뿐만 아니라 용서에 관한 책도 진짜 많이 읽었어... 이제는 그 사람이 나의 아빠로서 안됐다는 느낌 보다는 참 인간으로서 안됐다는 느낌. 정말 안된 인간이다. 그 사람이 받아들여진 건 아니더라도, 넌 그렇게 살다 죽더라도 그냥 참 안됐다. 그렇게 되면서 예전에는 분노, 화 같은 게 꽉꽉 올라왔었는데, 요새는 안 그런 것 같애.

... 대학원 다닐 때까지 굉장히 바빴어. 난 계속 뭘 해야 한다는 느낌. 계속 달려야 된다는 느낌. 그러다 한 학기 휴학을 했고, 그 때 나 자신한테 말했어 '아니야. 너 이제 걸어도 되고, 기어도 돼' '넌 굉장히 잘 한거야'. 쉬어도 된다는 느낌. 그러면서 삶의 여유를 찾게 된 느낌이 들고.

친유도 그런 것 같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여유를 두고 했으면...

'아, 나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런거 없어도 되고 그냥 살면서 천천히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텁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애. 개인차는 다 있겠지만,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누군가 의지할 존재가 있을 때 자기에게 딱 맞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 것 같거든.

**수정:** 응, 특히 외로울 때 그런 거 같애.

**진주:** 그럴 땐 오히려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게 좋다는 느낌도 들어. 일단 자기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신감을 찾고 나서, 그래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으니까...

**수정:** 응. 이렇게 만나면 결국 사랑 받고, 지지 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만나잖아.

**진주:** 정말 너무 힘들어...

**수정:** 기대를 많이 하게 되니까, 근데 또 내가 사실 정말 좋아해서 만난 게 아니고 외로워서 만난 거니까. 이 사람도 사실은 뭔가 못 받는 거지.

### ☞ 친유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더 넓은 이야기

**오펠:** 집단상담을 받았었는데, 화가 났던 게 끊임없이 ‘남한테 투영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이 맞기는 해. 근데 끊임없이 나를 고칠려고 드는 거 같았어. 나의 성격이나, 어떤 면을. 근데 그게 기분이 나빴던 게 피해자의 자율의지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바보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야. 피해자를 개조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

**진주:**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들.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니’ 이런 걸 물을 때. 그런 게 싫어.

**오펠:**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이긴 하지만 그런 규정들 때문에 나를 더욱더 피해자로 규정짓는 거. 그 개념 안에서만 나를 규정하는 느낌. 난 그냥 피해를 가진 한 인간이고, 한 여성인데 규정내에서만 나를 다 해석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나를 개조하려고 하는 거.

**수정:** 그러니까 넌 불안정하다...는 식의.

**오펠:** 응. 너의 어떤 면은 고쳐야 한다...라는 식의.

**수정:** 어쨌든 피해자도 피해자 스스로 자기를 냉철히 판단하고 이런 과정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 같애.

**오펠:** 물론 그렇지만, 예를 들면 내가 남편과의 성관계에서 어떤 특정 부분을 싫어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부분이 싫은 건 타당한 이유가 있어. 타당하게 싫다는 데 ‘나가 피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고쳐야돼’라고 규정지어 얘기하는 느낌. 이런 게 싫은 거야.

내가 싫은 건 당연한 건데.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걸 싫어하지 않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 나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만약 스스로가 피해로 인해 특정한 어떤 게 싫다면, 그걸 그냥 인정하라는 거. 자기가 갖는 느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나를 싫어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취향이나 감정 상태를 존중하라는 거. 그리고 더 할 얘기. 용서에 대한 이야기하고 싶어. 가해자를, 오빠를, 내 성폭력 경험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오빠가 이랬어’라는 식으로 인식한 거지. 그래서 내 고통의 원인이나, 후유증들을 다 그 사람한테 돌렸어. ‘쟤 때문이야. 채 때문이야.’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중간에 과정이 많았지만, 내가 괴로웠던 이유가 그 사람이 괴롭혔기 때문도 있지만, 그렇게 할 때, 그 때 이후로 ‘내가 나를 계속 괴롭혀 왔기 때문’에 더 괴로웠다는 거... 그래서 예전엔 ‘내가 오빠를 용서하고 안하고’였는데, 지금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내 피해 경험에 대해 내 자신을 용서해야 하는 것, 내가 내 어릴 적 아이와 화해할 문제가 있다면, 가해자는 누군가를 가해했던 자신과 화해해야 할 문제를 안고 가는 거지.... ....



나눴던 많은 얘깃들을 다 다루지 못하고, 반토막만 쉽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될 때 귀한 얘깃들을 충분히 더 다룰 수 있길 바래봅니다. (편집부 생각)

## 인어의 소풍

그림. 글 - 오신순우





자신을 사랑하기도 하고 경멸하기도 하면서 꼭 행복하게 살고 말겠다는 뜻을 세운 여자. 글과 그림을 평생 하고 살았으면 하는 인간. 그래서 지랄발광을 하고 때로는 비굴해서라도 글과 그림을 손에서 놓지 않는 여자. 여성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빠져리게 느껴가고 있는 20대 중반. 그녀는 말한다. “아자! 난 기필코 행복하고 말테다. 썩을 놈의 가해자들이 나를 부정하고 모욕했지만 내가 네 따위들에게 휘둘려서 나를 부정하고 모욕하며 살 것 같으나?”

## 성폭력 피해로 인한 성적 후유증을 어떻게 치유할까?

● 엘렌 베스, 로라 데이비스의 저서인 '아주 특별한 용기'에서 발췌했습니다.

● 발췌 : 편집부 그림 : 오신순옥

**생** 존자들은 일련의 연속체로 다가오는 성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대부분은 성폭력을 당한 결과로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당신의 문제가 특정한 피해와 관련이 있을 수도, 무관할 수도 있다.

또한 성적인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대체로 공포스러울 수 있다. 또는 성을 통해 당신의 모든 욕구를 충족하려고 할 수도 있다. 아니면 사랑을 나누면서도 정신이 땀 곳으로 쏠릴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 하더라도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성폭력 피해와 마찬가지로 성적 문제가 당신에게 강요되었던 것이다. 다행히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당신의 성을 경험할 가능성은 있다.

### ▷ 성행위를 잠시 보류하기

두려움과 혐오감, 성욕의 결여를 경험하거나 성행위에 대해 싫다고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성행위를 잠시 보류해 보라. 이 보류 기간은 당신의 한계를 정한 상태에서, 성행위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상태에서 당신의 몸을 알 수 있는 멋진 기회가 되기도 한다.

#### 1) 싫다고 말하는 법을 배우기

어떤 것들은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된다.

#### 2) 인생에는 성행위보다 중요한 것들이 많다.

잠시 성행위를 보류한다면, 또한 성행위에 대한 압박이나 문제들, 심지어 성행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쾌감조차도 싫다고 말하게 된다면 당신은 인생에 대해서, 또 당신의 가치에 대해서 성행위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 ▶ 당신 자신에서 출발하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성적인 경험을 하고 싶다고 느끼게 되면 서서히 시작하되 마음의 눈을 뜨고 있어라.

#### 1) 당신 자신과 사랑을 나누기

당신 자신이 좋아하는 상황을 만들고 여유를 두고 천천히 시작하라.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점점 더 많은 느낌과 민감함에 개방될 수 있다. 성적으로 흥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이 어떻게 느끼든 괜찮다. 준비가 되었다면, 그러니 까 너무 이르지만 않다면, 당신의 가슴과 외음부, 음핵, 질을 만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빠르게 반드시 해치워야 하는 것에 있지 않다. **오르가슴이 목적이 아니다.**

당신의 느낌을 알아차리고 스스로 쾌감을 느끼고 당신의 몸을 알기 위해서다.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 언제 멈추고 싶은지, 무엇 때문에 불편한지를 파악하라. 항상 알아차려라. 당신의 몸 안에 머물라.



#### 2) 과거의 회상

당신이 몸을 만지는 동안 최초의 성폭력 피해가 떠오른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과거를 떠 올림으로써 당신은 어린이로서 당신이 겪었던 경험들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또 그것을 통하여 가치 있는 정보와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오래 묵었던 감정들을 풀어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 연인이나 배우자와 사랑을 나누기

자신의 몸과 감정에 귀기울여 당신이 준비가 되었는지, 아직 덜 되었는지를 확인하라.

#### 1) 동기가 무엇인가?

당신이 성에 대한 치유 단계를 밟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보라. 성에

서 당신이 변화하고 싶은 것들을 목록으로 작성할 수 있다.

### 2) 그렇다면 성행위는 무엇인가?

당신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한 방식으로- 정직함과 쾌감과 친밀감의 경험으로서 - 성행위를 보도록 노력하라.

### 3) 새로운 관계를 막 시작했다면

연인들은 거의 잘 모르는 누군가와 관계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회색시키려고 종종 성급한 성적 친밀감을 다지려 하는데, 이는 앞으로의 관계에 큰 짐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4) 대화하기

사랑을 나눌 때 정말 당신이 어떤 상태에 있으며 무엇을 경험하는지에 대해 아직 이야기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끄집어낸다면 애인이 움츠러들 수도 있다.

그(녀)는 당신의 사랑이 식었다거나 당신의 성적 문제에 책임을 느낀다거나 이전에 당신이 어떤 말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화가 난다거나 혹은 당신이 한 말을 부인함으로써 예전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저런 부담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가장 강력한 지원자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는 셈이기도 하다. 애인은 종종 뭔가가 잘못되었다고 느껴 왔기 때문에 진실을 알게 됨으로써 위안감을 가질 수도 있다.

당신의 고통을 슬퍼하고 당신의 치유 과정에 동반자가 될 수도 있다. 정직하게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친밀감은 더욱 깊어진다.

### 5) 서두르지 말기

애인과 성적인 부분을 맞추어 가는 과정에서 당신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언제라도 당신은 그만둘 수 있다 는 것이다.

### 6) 창조적으로 되기

당신이 성적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원치 않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어쩌면 애인을 바라보는 것이 즐거울 수 있고, 또는 애인과 전화로 선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즐길 수 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전제를 조금 만 확장해 본다면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녀)가 당신에게 성적으로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하라.

### 7) 동료로서 바라보기

서로의 차이에 직면하는 동료로서, 서로를 배려하는 존재로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 ▷ 성적인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 천천히 진행하라
- 성행위의 중간 지점을 찾아라
- 현재에 머물라
- 당신의 두려움을 귀기울여 들어라
- 당신 자신과 깊이 연결되려면 성행위가 아닌 다른 방법을 발견하라
- 애인과 함께 점검하라
- 당신과 애인에게 열중하라
- 필요하다면 그만 두라

### ▷ 오랜 시간이 요구되는 성적 치유

성적 치유는 오래 걸린다.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1년 후나 2년 후에도 오늘 당신이 경험하는 성적 문제를 똑같이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당장은 끔찍해 보이는 문제도 나중에는 사소한 골칫거리 정도로 약화될 수 있다. 성행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좀 쉬워졌다가 더 깊은 충을 건드리게 되면 다시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성적으로 치유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별 진전 없이 되풀이된다 느끼더라도 당신은 옳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충만한 성을 개발하려고 꾸준히 노력 하겠다면, 먼저 당신이 현재 서 있는 지점을 인정하고 인내하라. 그리고 치유할 수 있다 는 당신의 잠재력을 신뢰하라.



## 성별화된 폭력으로서의 스토킹

구애형 스토킹 피해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 안수진(前 정보사업부 간사)

스토킹은 새로운 사회현상에 따라서 생긴 신종 언어이다. 아직까지 스토킹에 대해 정확하게 합의된 개념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목적에서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다니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뜻한다. 스토킹이 성립되려면 적어도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그 중 하나가 피해자의 ‘거부 의사’이며, 나머지 하나는 ‘가해 행위의 반복성’이다. 스토킹은 직접 대면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전화·이메일·편지·팩스 등 각종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이용한 심리적 괴롭힘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폭력·성폭행·감금·살인 등 물리적인 괴롭힘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구애형 스토킹은 사회문제나 범죄로 부각되지 않고 단순히 열정적이고 집요한 구애 행위로 여겨질 뿐이다. 이러한 구애형 스토킹에 대한 통념은 여성들의 스토킹 경험을 무화시키고, 스토킹을 사회로부터 탈맥락화시켜 사적인 일로 치부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피해자는 자신의 주변을 맴돌며 위협과 불쾌감을 조성하는 행위들을 개인적 수준에서 대처하거나 그대로 참아낼 수밖에 없다.

스토킹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매우 젠더화되어 있다. 물론 스토킹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인 경우도 있으며, 동성들 간의 스토킹 사례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대다수는 여성이며, 가해자는 남성이다. 실제로 최근의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78%가 여성이고 가해자의 87%는 남성이었다(주희종 1999). 이러한 이유로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여성 폭력 금지법’ (Violence against Women Act) 안에 스토킹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스토킹 가해/피해자의 수치는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성범죄만큼이나 스토킹이 젠더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젠더화된 스토킹 형태는 특히 구애형 스토킹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또한 구애형 스토킹을 둘러싼 언설들은 다른 여성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서 무화되는 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스토킹을 정당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성희롱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과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직장내 성희롱은 현실에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었지만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서는 존재하지 않아 왔다. 단순히 직장 동료들끼리의 친근함의 표시로 여겨져 왔던 행위가 여성계의 꾸준한 여론화 작업과 법의 선포로 ‘성희롱’이라는 명명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부터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스토킹에 대한 심각성이 공유되지 않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남성 스토킹의 행위는 단순히 열정적인 구애 활동쯤으로 여겨지고 있을 뿐이다.

스토킹이 여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스토킹 연구는 실태 조사나 가해자를 병리화시키는 의학적 측면이나,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설명하는 법적 측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기존의 스토킹 연구들에서 성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기존 연구들에 있어서 성별은 단지 발생률이나 가해율을 측정하는 변수로만 사용될 뿐 스토킹 경험 자체가 어떻게 성별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니었다. 스토킹을 성중립적으로 설명하는 이러한 접근 방법은 여성 이 쳐한 부정의한 현실과 경험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관점에서 스토킹을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성이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강요하는 구애형 스토킹이 어떠한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합리화되는지를 분석하고, 여성 피해자가 남성과 어떤 지점에서 스토킹을 다르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밝혀냈다. 또한 그 동안 구애형 스토킹이 여성들의 애매한 태도 때문에 발생하며, 스토킹 피해자들은 수동적일 것이라는 막연한 통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착적이고 폭력화된 사랑을 낭만적 사랑으로 인식하는 사회문화와 연애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한 남녀관계는 스토킹을 정상화된 구애방식으로 여기게 만든다.

낭만적 사랑의 문제점은 사랑이 전적으로 감정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그릇된 믿음을 가지게 만든다는 점이며, 스토킹과 같은 극단적인 방식까지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자신만의 독특한 사랑 방식일 뿐이라고 믿게 만든다는 데 있다. 결국 구애형 스토킹은 인간관계의 상호성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강요하는 것이다.

또한 물질적인 공세로 이어지는 연애의 이벤트화와 기존의 강한 남성상에 여성을 잘 배려해주는 세심한 성격이 첨가된 신남성상의 대두 역시 일방적인 선물이나 이메일, 전화 등의 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스토킹을 열렬한 구애행위로 낭만화한다. 특히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남성과 내숭떠는 여성이라는 성별화된 각본과 사랑 지상주의를 끊임없이 유포하는 대중매체에 의해서 남성에 의한 구애형 스토킹은 미화된다.

둘째, 스토킹을 무화시키는 문화로는 물리적 상해만을 폭력으로 인식하는 통념과 여성은 독립적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전통적으로 여성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신체의 통제를 받아왔으며, 여성 비하적인 언어와 분위기에서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가해지지 않는 비물리적인 스토킹의 경우 가해자는 물론 여성 피해자들조차도 그것을 폭력으로 인식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폭력에 대한 제한적 인식은 스토킹을 사회문제화하기 어렵게 만들며, 피해자들의 경험을 드러나기 힘들게 만든다. 그러나 언어적 폭력, 통제, 감시등도 피해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큰 스트레스를 야기하며 한 개인의 인격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 여성 집단 전체를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게 만든다.

결국 피해자들은 자신의 일상이 스토킹에 의해서 통제됨으로써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을 참아야한다. 그리고 개인의 권리가 집단적 이익에 양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무관심은 스토킹 피해를 묵인하게 만든다.

인권이나 프라이버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립적 개체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전통적으로 여성은 가족이나 남성에 귀속되어 있거나 소유된 존재로서 인식되어 왔기에 이것이 난점으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거절은 분명한 의사 표현으로서 존중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해도 좋은 것이나 혹은 협상의 대상쯤으로 취급되면서 여성의 의사를 배제한 채 이루어지는 스토킹이 일반인에게 범죄로 인식되지 않는다.

셋째, ‘여성다움’과 ‘남성다움’과 같이 성별에 따라서 고착화된 이미지들은 스토킹의 행위자라고 할 수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에게도 작동되어 성별에 따라 이들은 다르게 규정된다. 언론의 스토킹을 다루는 보도 태도에서도 이것은 확연하게 나타나는데 남성의 경우는 스토킹 행위를 중심으로 서술되는 반면에 여성의 경우는 개인적 기질에 초점이 맞춰지는 등 사회로부터 고립된 비정상적인 개인으로서만 취급된다.

상대방이 싫다는데도 집요하게 구애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여성다움에서 벗어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여성 스토킹의 경우 남성 스토킹에 비해서 더 일탈적인 사람으로 규정되고 행위 자체가 회화화되는 것이다.

또한 성 규범 이데올로기는 여성들이 스토킹이라는 폭력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신체적인 열세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에서 항상 대두되는 피해자 유발론 역시 스토킹 사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

정숙하지 못하거나 평소에 남자 관계가 복잡한 여성에게만 스토킹이 발생한다는 사회적 통념은 피해 여성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이러한 통념들은 가해 행위를 오히려 두둔함으로써 피해 여성들로 하여금 피해 사실을 함구하게 만들고, 장기적인 정신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제 2차 피해를 초래하게 한다.

넷째, 스토킹 피해 여성들은 남성 피해자들과 달리 성적, 신체적인 위협을 매우 강하게 느끼고

있다. 스토킹 과정에서 여성 피해자들은 종종 가해자가 성적인 소문을 내서 피해를 당하거나, 성폭력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 여성의 혼전 순결이나 정절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성적인 소문은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에게 있어서 강력한 낙인(stigma)이다. 특히 스토킹이 과거에 피해자와 연애나 성관계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것을 빌미로 협박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법기관은 물론이거나 친구나 가족들에게 조차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어하며, 스토킹의 구애 행위를 단호하게 거절하기조차 힘들어하기도 한다.

또한 스토킹 과정 중에서 행해지는 (성)폭력에 대한 위협은 피해자의 행동반경을 제한하며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경험하게 만든다. 반복적이면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스토킹은 비물리적 폭력에 의한 스토킹이더라도 스트레스와 공포가 몸 속에 각인되어서 피해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다른 신체적인 질환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없는 현 시점에서 피해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언어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스토킹에 대한 그릇된 통념과 자신의 실제 경험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이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경합을 벌인다.

스토킹 피해자들이 순종적이거나 거절을 못하는 여성이라는 사회적 통념은 스토킹의 원인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돌리게 만든다. 그러나 실제로 만나본 피해자들은 스토킹이라는 긴 피해의 시간 속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위축되기도 하지만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또한 스토킹 피해를 겪으면서 아직은 미약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연대를 추구하기도 하며, 적극적인 권리 의식과 여성주의 의식을 수용하는 모습도 보였다.

본 연구는 구애형 스토킹 피해자의 경험 드라내기를 통하여 스토킹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기존의 물성적인 스토킹 담론에 대응해 여성주의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 분야에서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지를 위한 실질적인 연구와 정책적 담론이 시도되길 바란다.



※ 이 글은 필자의 논문 - “별화된 폭력으로서의 스토킹 연구: 구애형 스토킹 피해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2-을 요약한 것이다. 필자는 사회학과 여성학을 전공. 주 관심 분야는 ‘폭력’이다.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나는 글을 쓰고 읽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은 무언가를 만들고, 그리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인간’이라 한다.

## 스토킹 관련 정책 현황

二  
四  
五



표창원(경찰대학 조교수)

### 1. 스토킹을 '범죄'로 인식하여야 하는 이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적절한 한국어 대체용어가 제시되지 않을 정도로 논의가 진척되지 않은 스토킹의 개념을 서구에서와 같이 “실질적인 물리적 폭력이나 협박 등이 사용되지는 않을지라도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괴로움이나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불쑥 나타나거나, 따라다니거나, 전화 및 기타 통신수단으로 일방적인 연락을 하는 등의 행위”라고 규정할 경우 수 많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스토킹의 구체적 행위로는 피해자 몰래 집요하게 병적으로 따라 다니거나 피해자의 집이나 사무실에 갑작스레 나타나거나 불필요하고 짜증나는 전화를 걸거나 협박적인 내용의 편지나 호의적인 선물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등이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행위들이 지속되게 되면 협박이나 폭행, 강간이나 상해, 심지어 납치유괴나 살인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수많은 여성들이 옛 애인이나 배우자에게 살해되고 그중 90%가 살해되기 전 스토킹을 당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등 정보통신의 발달로 그 익명성과 신속성을 이용하여 전자메일 등을 통해 사이버 상에서 스토킹(cyber stalking)이 일어날 위험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스토킹은 무서운 범죄행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힌 피해자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하고 불안감, 불면증, 우울증 및 대인공포증 등 각종 심리적, 정신적 질환을 야기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자살에 이르기도 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

비록 스토킹 문제가 사회의 이목을 받게된 이유는 소수 유명인에 대한 정신이상자의 애정망상형 내지 집착형 스토킹이지만, 가장 심각하며 많이 발생하는 스토킹 행위는 가정폭력에 동반되거나 헤어진 부인이나 애인 또는 직장 동료 등 서로 아는 사람 사이에 얹힌 감정과 복잡한 관계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에 의해 악의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대개 자신이 하는 행동이 전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듯, “현행 법체계의 미비를 틈타서” “고의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며” “살인, 강간, 납치, 폭행 등 흉악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새로운 유형의 공격행위”인 스토킹은 당연히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걸맞는 처벌법규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2. 스토킹 관련 정책수립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미국에서는, 1990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로 “반 스토킹 법”을 제정하였고 점차 대부분의 주에서 이와 유사한 “반 스토킹 법”을 제정하여 현재 48개 주에서 이를 시행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각 지역 경찰당국은 스토킹 사건 전담 부서를 발족시켜 스토킹 피해자의 법익보호에 앞장 서게 되었다. 호주에서는 1993년 퀸즈랜드 주에서 최초로 ‘반 스토킹 법’을 도입한 이래 1990년 대 중반까지는 호주 전역에서 ‘반 스토킹 법’을 제정, 시행하기에 이르렀다<sup>1)</sup>.

하지만, 스토킹 행위 처벌을 위한 법규 마련과 시행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스토킹 행위 자체가 물리력의 행사나 신체적 피해 없이 오직 ‘정신적, 심리적 피해’라는 다분히 주관적인 요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해를 끼치지 않는 행동이나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sup>2)</sup>. 또한, 이렇게 유형적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의 “고의”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의 문제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며 구성요건으로서의 행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존재한다.

반 스토킹 법에 반대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데 위헌소송이 제기된 적도 있다. 이들의 주장은 반 스토킹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vague) 그 대상 행위가 광범위(broad)하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계속적인 행동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수가 있고 경찰에게 지나친 자유재량을 부여하게되어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법집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증거수집도 쉽지 않으며 경찰관도 그 행위에 대한 인식과 개념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그 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sup>3)</sup>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신종범죄에 대한 개념규정과 그 적용에 있어서의 기술적 문제들을 지적하는 통상적인 우려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신종범죄로서의 스토킹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뛰어넘을 정도는 아니다. 아울러, 고의의 입증문제나 무형적 피해의 문제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와

1) Ogilvie, 전계서

2) 더 자세한 설명은, R. Swanwick, (1996) “Stalkees strike back - the stalkers stalked: A review of the first two years of stalking legislation in Queensland”, in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Law Journal*, vol. 11, no. 4, pp. 487-502 참조.

3) Karmen, p.36-37 ; The 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home pages  
( <http://www.ojp.usdoj.gov/ocpa/94Guides/DomViol/chap2.htm> )

뇌물죄의 대가성, 문학이나 예술품에 있어서의 음란성의 판단 등.) 그러므로, 반 스토킹 법에 대한 반론들은 반 스토킹 법의 제정과 집행에 있어 보다 치밀하고 면밀한 검토와 현실성을 반영하는 등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특히,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장에서의 경찰의 판단과 일반인의 법인식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그 처벌에 있어서도 정신·심리적 문제로 인한 경우에는 정신·심리 치료로 대체하거나 처벌에 병과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 3. 외국의 정책·입법 사례

미국의 많은 주는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가해자로부터 폭력의 위협이 이루어졌다고 믿을 만한 정황으로부터 야기되는 ‘살인이나 중상해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reasonable fear of death or grave bodily injury)”를 요구한다. 그리고 어떤 주는 스토킹 자체를 단순한 경죄(misdemeanor)로 취급하기도 하고 또 다른 주는 중죄(felony)로 여기기도 한다. 대개의 주에서는 둘 다 규정을 두어 처음 스토킹 행위를 한 자는 경죄로 처벌하지만 전과가 누적된 상습범이나 접근금지명령이나 가택연금 등의 보호조치를 위반한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이나 흥기를 허대한 스토킹인 경우에는 중죄로 다스리고 있다.

호주 역시 각 주마다 다른 법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빅토리아, 퀸즈랜드 및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의 반 스토킹 법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 호주 빅토리아, 퀸즈랜드 및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의 스토킹 처벌 규정 비교 ]

	해당법규명	도입연도	스토킹의 개념	요 건	벌 칙	예 외
빅토리아 주	형법 제21조 A (Crime Act 1958 s21A)	1995	육체적 혹은 정신적 피해나 두려움 혹은 공포심을 유발할 의도로 이루어지는 행위	가해자에게 두려움, 공포 혹은 육체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고의(혹은 그 결과에 대한 인식)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로 인해 의도한 결과가 초래되어야 함.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만약 그 행위가 법집행, 법 규의 이행, 영장의 집행 혹은 공공의 이익과 관계되는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해졌다며 죄를 구성하지 않음.
퀸즈랜드 주	형법 제359조A (Criminal Code Act 1899 s359A)	1993	고의적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1회 이상 혹은 1회라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의식, 두려움 혹은 폭력에 대한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그러나, 법행당시 가해자가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거나 법원의 명령을 어긴 상태라면 7년 이하의 징역	공의를 목적으로 행해진 노사관계, 정치논쟁 혹은 공적인 논쟁이나 합법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합리적인 행위는 처벌하지 않음.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	형사통합법 제19조AA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s19AA)	1994	적어도 2회 이상 행해지는,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가해자가 반드시 심각한 육체적 혹은 정신적 피해, 또는 심각한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함.	3년 이하의 징역. 그러나, 법행당시 가해자가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거나 법원의 명령을 어긴 상태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동일한 행동으로 인해 스토킹이 아닌 다른 범죄로 기소되었거나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스토킹 죄로 기소되지 않을 수 있다.

(출처 : <http://www.aic.gov.au>)

## 4. 우리나라의 경우

스토킹 행위는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인간성의 황폐화와 성적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대인관계 문제의 확산, 가상과 현실의 구분을 어렵게 하는 정보화의 촉진과 개인정보의 노출, 대중적인 흥행위주의 매스미디어 등의 영향으로 더욱 기세를 부릴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스토킹이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스토킹의 처벌에 관한 입법논의가 없지는 않았으나 아직은 적극적이며 구체적인 움직임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규 하에서는 스토킹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실제 처벌이 어려우며 그 행위가 심각하고 명백하며 범증이 확실하여 형법상 폭행이나 협박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이나 성폭력특별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어떤 위험인물이 누군가를 계속하여 뒤따라 다니고 악의적인 편지나 전자우편을 보내고 다소 위협적이고 협박적인 태도로 행동할지라도 그것이 명백히 현행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찰이 그를 체포할 수는 없으며 현재로서는 이를 처벌할 분명한 법적 근거나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대개의 개별적인 스토킹 행위는 실제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 자체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고, 또한 일련의 계속적인 스토킹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폭력에 대한 두려움 및 공포심을 느끼지만 가해자는 ‘애정의 표현’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커다란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가운데,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용감한 자만이 미인을 차지한다” 등의 잘못된 사회적 속설이 스토킹 행위를 부추기거나 용인해 주고 있다는 데 커다란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공백과 구시대적 인습 및 관행의 그늘아래 오늘도 사회 이곳 저곳에서는 수많은 “인정받지 못하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호소할 데도 없이 공포에 떨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에는 살인이나 강간, 폭행 등의 강력범죄나 자살 등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진 이후에야 경찰이나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형법이나 다른 특별법의 규정들이 적용되기 힘든 신종범죄인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반 스토킹 법’의 입법(형법 내에 ‘스토킹 죄’ 규정의 신설 혹은 별도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하여 명백하게 그 개념을 정립하고 그 구성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물론, 입법과정에서는 일련의 행위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어느 정도나 누적, 반복되어야 범죄로 볼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집합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라보아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위협이나 괴롭힘이 되는 것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또는 그 위협이나 괴롭힘에 대한 통상인의 합리적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충분히 도출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적절한 경찰의 개입수단, 예컨대 접근금지령 등 예방대책이나 형사 사법적 처리절차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소개한 미국과 호주의 입법 사례는 이러한 우리의 반 스토킹 입법 노력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저자 표창원님은 경찰대학을 나와 경찰청 경위를 거쳐 영국 Exeter 대학에서 석, 박사 과정을 이수했으며 현재 경찰대학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The Police and Crimewatch UK」, 「경찰홍보론」, 「피해자학」이 있다.

# 미국내의 스토킹에 대한 연구 조사



본 기사는 1998년에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와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공동 후원으로 이루어진 연구인 'Stalking in America: Finding From the 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를 요약, 번역한 것이다.  
(연구자: Patricia Tjaden, Nancy Thoennes)



역자:윤영미(수원과학대학 교수)

## 1. 스토킹의 정의

본 연구 조사에서 사용한 스토킹의 정의는 NIJ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에서 정의한 반 스토킹 모델 규정과 흡사하다. 반 스토킹 모델 규정은 스토킹이 그 피해자들에게 자명한 폭력적 위협을 했다는 증거를 요구하지는 않으나 피해자들이 강한 정도의 공포 (신체적 상해의 두려움)를 느낀 경우는 해당이 된다고 본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 조사에서 사용한 스토킹의 정의는 스토킹이 그 피해자들에게 명백한 폭력적 위협을 했다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아도 피해자들이 심한 공포감을 느낀다면 스토킹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 2. 스토킹의 발생 비율

본 조사는 1995년 11월부터 1996년 5월까지 미국의 남성, 여성 각각 8,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한 양적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조사에서 스토킹의 피해는 개인의 평생에 걸친 발생 비율과 연간 발생 비율로 측정했다. 심한 정도의 공포감을 느꼈다는 정의 하에 평생 중에 스토킹을 경험했다는 피해자는 여성의 경우 8%, 남성의 경우 2%에 해당되었다. 즉, 미국 호구 조사에 의한 인구 조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미국 전체 여성 인구 중 12명중에 1명이 스토킹을 당한 경우가 있었으며, 미국 전체 남성 인구 중 45명 중 1명은 스토킹을 경험한 바가 있다. 본 조사에 참여한 피해자 중 90%가 단 한명의 스토킹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피해자 중 여성의 9%, 그리고 남성의 8%는 2명의 스토킹으로부터 피해 경험이 있었고 세 명의 스토킹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여성은 1%, 남성은 2%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 중 여성의 1%와 남성의 0.4%는 조사 실시전의 12개월 간 스토킹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조사 결과는 미국 전체 인구로 보면 약 1,006,970 명의 여성, 370,990명의 남성이 매년 스토킹 피해자인 것으로 해석된다. 스토킹 피해자의 74%는 18-3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유형의 폭행에 비해 스토킹은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 중 0.3%의 여성들이 조사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전에 해당되는 기간 중 강간 미수를 경험한 바가 있으며 1.9%는 같은 기간 중 폭행을 경험한 바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1년이란 기간 동안 여성들은 강간보다 스토킹 피해가 세 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스토킹의 피해자와 가해자

스토킹은 일반적인 범죄에 속하지만 그 일차적인 피해자는 여성이고 일차적인 가해자는 남성이다. 조사 대상 중 여성 피해자는 78%, 남성 피해자는 22%이었다. 여성 피해자들과 남성 피해자들의 스토킹 가해자는 각각 94%와 60%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들이 보고한 스토킹 가해자들은 87%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그들의 가해자를 알고 있었다. 피해 여성 중 23%와 피해 남성 중 36%만이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 더 나아가, 여성은 현재 또는 과거 배우자, 현재 또는 과거의 동거인(동거인은 여성, 남성 모두 포함), 그리고 현재 또는 과거 여자/남자 친구와 같은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로부터 스토킹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피해자의 38%는 현재 또는 과거 배우자로부터, 10%는 현재 또는 과거의 동거인으로부터, 그리고 14%는 현재 또는 과거의 여자/남자 친구로부터 스토킹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59%의 여성 피해자와 30%의 남성 피해자들은 가까운 관계를 맺었던 사람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여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스토킹을 하는 경우는 여성이 상대와의 관계를 종료시키려고 할 때 스토킹이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견해와는 달리 여성들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에도 스토킹을 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록 남성들도 스토킹을 당하지만 여성들이 남성들 보다 스토킹 피해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 사건에서 미국 여성 중 1.8%, 남성은 0.8%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했고, 미국 여성의 1.6%, 남성은 0.8%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유형으로는 여성의 경우 원치 않는 전화 통화 건수가 많았다. 비슷한 수의 여성 및 남성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원치 않는 편지나 물건을 받았거나, 사유 재산이 파괴됐거나, 애완 동물을 죽이거나 죽이겠다고 협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자와 닷컴' 발췌

### 4. 스토킹은 왜 발생하는가?

스토킹은 다양한 상황에서, 그리고 다양한 관계를 갖는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자가 스토킹을 하는 이유 역시 매우 다양하다. 피해자들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가해자들이 스토킹을 하는 이유로 피해자를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21%, 피해자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20%,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주려고 하는 욕구가 16%로 나타났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중 7%만이 가해자가 정신과적 병력이 있거나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스토킹들은 정신 이상자가 아닌, 겉으로 보기애 평범한 사람들이다.

## 5. 스토킹과 다른 폭력과의 관계

스토킹과 다른 유형의 폭행과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것으로 NVAW (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에서 보고하고 있다. 현재 또는 과거의 배우자, 동거인에 의해 스토킹을 당한 여성 중 81%는 동일인에 의해 폭행을 당했고, 31%는 동일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남성과 결혼을 했거나 동거한 사실이 있는 여성 중 20%는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그리고 5%는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고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배우자 또는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는 남성들은 일반 남성 인구에 비해 상대 여성 폭행할 확률이 네 배, 성폭행할 확률이 여섯 배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친밀한 관계에 의한 스토킹이 많았는데, 이혼하기 전에 아내를 스토킹했던 전 남편들은 스토킹을 하지 않은 전 남편들에 비해 정신적 학대나 여성 통제하려는 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을 당한 여성 중 55%, 남성 중 48%가 스토킹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응답했다.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 자신이 신고를 했다. 스토킹 신고에 대한 경찰의 반응은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 첫째는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가해자를 체포하거나 유치할 가능성이 더 높았고, 둘째는 여성 피해자를 피해자 서비스 기관에 의뢰할 가능성이 남성 피해자인 경우보다 더 높았다. 스토킹을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스토킹이 경찰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경찰이 그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스토킹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웠다고 응답했다.

## 6. 스토킹이 미치는 심리적, 사회적 영향

조사를 통해 스토킹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여성 중 30%, 남성 중 20%는 스토킹 피해로 심리 상담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는 피해가 없었던 사람들에 비해 자신의 안전이나 스토킹 가능성에 대해 민감했으며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무기를 소지하는 경우가 많았고, 여성과 남성 모두가 개인의 안전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믿고 있었다.

스토킹 피해자 중 26%는 스토킹으로 인해 직장에 출근을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조사에서는 출근을 못한 이유를 묻지는 않았지만 그 이유는 대략 법원 심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가해자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변호사와 상의를 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추측된다. 어느 정도의 손해를 겪었느냐는 질문에는 피해자 중 7%가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시간적 손실을 겪은 후 다시 출근한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11일간의 결근 손해가 있었다.

## 7. 결론

**스토킹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간주해야 한다.** 조사 결과 스토킹은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국 내에서만 1,400만명이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8세 이하의 피해자 또는 휴리스나 전화가 없는 가정을 모두 포함시킨다면 피해의 범주는 더 클 것이다. 스토킹은 합법적인 형사상의 문제로 다루어야 하며 국민의 공중위생 사안으로 간주해야 한다.

**반 스토킹 규정에서 뚜렷한 위협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주에 따라서는 스토킹 가해자들이 그 피해 대상자에게 폭력의사가 뚜렷해야만 스토킹으로 간주한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스토킹자들이 말이나 서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후 행동을 실천에 옮기기보다는 일련의 암시적인 맥락을 통해서 피해자를 가해하기 때문에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설문에 응답한 피해자들 중 가해자로부터 직접 협박을 당한 경우는 50%에도 못 미친다. 이런 결과는 구체적인 언어적, 서면적 협박을 스토킹의 증거로 요구하는 모든 주의 반 스토킹 법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관점을 지지하고 있다.

**스토킹에 대한 연구는 유명 인사 스토킹을 넘어서 아는 사람이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일반 사람들의 스토킹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다수의 스토킹 사례는 서로 잘 아는 사람들 간에 발생하며 모든 스토킹 건수의 반 정도는 현재 또는 과거에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 간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간의 스토킹에 주력해야 한다.

**국가의 형사법 관계자들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 사항에 대해 종합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 스토킹과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여성 스토킹 피해자의 81%는 동일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31%는 성폭행을 당했다. 판 검사 그리고 변호사들이 적절한 사건처리와 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이들에게 스토킹 피해자들이 당면한 실제적인 위험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

**공식적, 비공식적 법 집행 및 중재의 효과에 대한 조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에 의하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가해자 중 70%는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구속이나 접근 금지 명령과 같은 공식적인 법 체제의 중재보다는 경찰의 경고와 같은 비공식적인 경찰 개입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다양한 상황 하에서 어떠한 법의 중재가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국민의 정신 건강을 위해 일하는 관계자들은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치료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스토킹 피해자 중 25%가 스토킹으로 인해 심리상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들은 다른 유형의 피해자 보다 자신의 신변 안전에 대해 공포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 건강 관계자들이 스토킹 피해자를 돋기 위해서는 스토킹의 특성, 스토킹이 미치는 정신적 영향 그리고 스토킹 피해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많은 정보가 있어야 한다.

**스토킹 중재 전략에는 주소를 비밀로 보장하는 프로그램이 추가되어야 한다.** 자료에 의하면 스토킹 피해자의 20%가 스토킹자를 피하기 위해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감안한다면 피해자들의 주소에 대한 비밀 보장을 해야한다. 피해가 지속되거나 신변 안전이 매우 위험한 피해자들에게는 새 주소를 노출시키지 않고도 우편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 본 논문을 번역해 주신 윤영미님은 현 수원과학대학 항공관광과 교수로, 본 상담소 후원회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스토킹 관련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하네요.

## 인터넷을 이용한 성폭력 상담의 과제

### 성폭력상담원을 중심으로

권주희(본 상담소 상담팀 간사)

**사** 이버 공간은 흔히 정보의 바다라 부를 만큼 방대한 양의 정보를 가진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한다. 또한 이메일, 메신저 등 다양한 방식으로 1:1 또는 1:多, 多:多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하며, 기존의 언론을 뛰어넘는 대안적인 미디어 구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이버 공간은 이제 또 하나의 생활공간이 되었다. 이러한 '사이버 문화'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익명성, 자율성, 개방성을 들 수 있다.

인터넷의 이러한 특징은 특히 인터넷상의 상담을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여 상담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각종 상담사이트에서 진행중인 인터넷상담은 게시판(공개, 비공개), 이메일, 채팅, 상담사례모음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상담은 면대면 면접상담이나 전화상담과는 또 다른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성폭력 상담의 경우, 피해자들은 자신의 신분이 최대한 노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담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성폭력 상담을 위해 인터넷을 활용한다면 내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의 자발성과 주도성을 살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읽기와 쓰기가 갖는 치료적 효과도 갖는다.

또한 상담원들에게는 저장과 정리가 쉽고, 상담 기법을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으며, 문자로만 상담이 진행되므로 상담 내용에만 주로 에너지를 쏟을 수 있어 관계 형성을 위한 시간소모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담은 화상채팅 이외에는 대부분 문자표현에만 의존하므로 비언어적 표현 즉 몸짓이나 표정을 통한 표현의 전달이 어렵다. 따라서 그때 그때마다 적절하게 상호작용을 하기가 매우 힘들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 상담에서는 대개 내담자가 스스로 원하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정보와 상담하고 싶은 내용을 공개하기 때문에 상담원의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내담자가 밝히지 않음으로써 상담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한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폭력 상담을 할 때 요구되는 과제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개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라 할지라도 내담자는 해당 게시판 이외의 다른 곳에 상담 이외의 목적으로 자신의 글이 사용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곳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환경, 시스템 등 상담원이 제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완전비밀보장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대안으로 복사방지 기능 등의 보완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공개게시판의 경우, 상담 글 내용에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됨으로써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리 내담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이러한 가해자들의 역고소 사건이 늘어나고 있어 인터넷상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이용자의 신상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게시판상담의 경우 장난으로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매우 많다.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를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는다. 이용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도록 하여 최대한 장난글을 막아야 될 뿐 아니라 상습적으로 장난 글을 올리는 경우에는 IP추적 등의 방법을 이용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담원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상담을 하기 위해 글 쓰는 기술을 훈련해야 한다. 아무리 내담자를 이해하고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글로서 모든 것을 표현해야 하므로 쓰는 기술이 없이는 상담원 자신이 인터넷으로 상담을 한다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

또한 내담자도 상담원의 상담답변을 보고 상담원에 대한 보이지 않는 부분 즉, 상담원의 인격이나 학식, 그리고 자신에 대한 성의도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연속상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담원의 전략이 필요하다. 인터넷상담이 상담의 한 영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속상담으로의 노력이 우선과제라 여겨지며, 그러기 위해서는 내담자와 지속적으로 인터넷상에서 만나도록 하는 상담원의 전략이 필요하다.



※ 늘 함께하는 활동가가 된 권주희님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이와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이 행복' 인 줄 알며, 항상 좀 더 나은 변화를 꿈꾸며 나날이 강해지고자 노력하는 친구!

## 여성폭력정책 관련 법률 적용 문제<sup>※)</sup>



● 최은순(변호사, 법무법인 새길 법률특허사무소)

### 1. 문제의 제기

여성부의 “여성폭력방지 종합대책”과 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의 기능 및 역할 강화 방안”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으며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다.

이하에서는 현재 여성부의 여성폭력종합대책, 특히, 각 상담소 보호시설의 기능 및 역할 강화방안 등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위와 같은 우려를 염두에 두고 여성폭력방지대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야기되는 불협화음의 유래점이라고 추정되는 각 여성폭력관련 상담소 설치의 근거법률 및 그 활동의 준거법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제도를 둘러싸고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 2. 여성폭력관련 상담소 설치의 근거법률 및 그 활동의 준거법

#### 가. 각 상담소의 설치의 근거 법률 및 그 내용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등에서는 모두 국가 등의 책무로 각 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 각 상담소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육성·지원에 대하여 규정

\* 이 글은 지난 12월 5일 본 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 공동 주관한 긴급토론회 “여성 폭력추방정책, 무엇이 문제인가”의 토론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함과 동시에 각 상담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코자 할 때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그 설치기준과 신고 등에 관하여는 여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2) 각종 보호시설의 경우에도 각종 상담소와 마찬가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사회복지법인이나 기타 비영리법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성폭력상담소와 요보호자를 위한 시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설치기준 및 인가 또는 신고 등에 대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3) 동시에 각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더 나아가, 여성부장관과 시·도지사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보고 미이행이나 허위보고의 경우에 과태료부과규정을 두고 있다.

(5)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시설에 필요한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에 업무정지,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인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 상담소나 각종 보호시설의 경우에 신고 또는 인가없이 설치·운영할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나. 상담소등 활동의 준거법

(1)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윤락행위등방지법,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포함 14개 법률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정의하고, 사회복지법인은 위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법률내용을 근거로 하여 각 상담소 등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 상담소가 설치·운영하는 상담소·보호시설 등이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그 법인이나 이들 법에 정한 각 상담소 등의 회계처리도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등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 문제점

#### 가. 각 상담소등의 '신고 의무' 와 관리감독의 과잉

(1) 성폭력특별법이나 가정폭력방지법 등을 제정할 때 각 상담소의 신고의무규정 등을 신설한 이유는 필요최소한도의 자격 없는 상담소의 난립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보여진다. 그런데, 가정폭력방지법에서는 이러한 신고의무가 법률적으로 강제되어 신고 또는 인가 없이 상담소 등을 설치·운영한 자에 대하여 그 인가 등 취소는 물론이고 그 운용의 영리목적 여부를 막론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다.

(2) 그런데, 위 법률들의 제정이후 행정기관에 일괄 위임된 시행규칙제정등을 통해 법의 기본취지나 배경 등에 대한 검토 없이 행정적인 입장에서의 규율만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시설기준 미달일 경우에 1회 경고, 2차 몇 개월간의 업무정지, 3차 상담소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취소 등과 같은 성폭력특별법 시행규칙상의 행정처분기준 등은 그 운용시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한다면 각 상담소 등을 행정 하부조직유사로 보아 그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대로 살릴 수가 없도록 만든다. 운영법인과 각 상담소의 회계분리 요구, 상담소 상근자와 법인 소속 직원의 분리 및 업무분리 요구, 상담소 상근자의 출퇴근을 공무원 출퇴근 시간에 맞출 것, 법인 부설 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의 미인정 등의 태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3) 이러한 태도는 각 상담소가 피해자를 위한 눈에 보이는 개별상담활동 외에 제도적인 미비점의 개선이나 홍보활동 등 여성운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 나. 각 상담소의 업무에 대한 왜곡된 해석

여성폭력관련 법률에서는 각 상담소의 업무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폭력피해자로부터의 신고·상담을 받는 일, 일시보호, 의료기관 또는 관련보호시설로의 인도, 법률지원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각 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기타 조사·연구활동을 각 상담소의 업무영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각 보호시설은 이들 업무 외에도 각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회복과 사회복귀를 돋는 일, 기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관련 공무원들은 이 규정을 매우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며, 여성인권활동이나 여성권의 증진 활동의 경우 각 상담소의 업무가 아니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여성폭력이 남성중심적 성문화, 차별적 권리관계에서 발생하며 따라서 개개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 여성인권 침해의 문제임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여성인권활동이나 여성권의 증진 활동은 각 폭력의 범죄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 다. 각 상담소의 성격 - 사회복지시설로서의 성격 및 여성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로서의 성격

(1) 현재 성폭력특별법이나 가정폭력방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해 신고 또는 인가된 각 상

담소나 각 보호시설 등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시설로 보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시설로 본 사회복지법의 규정들을 엄격한 것대로 현실에 적용하게 되면 각 보호시설 등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각 상담소들은 그 정체성의 혼란은 물론, 상담소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위 관련법에 따른 행정적인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각 상담소들은 상담소의 업무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포괄적인 업무범위를 대부분 포기하고 폭력방지정책이나 홍보 등의 사업은 모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맡기고 개인들의 피해구제에만 신경을 쓰면서 사회복지시설 고유의 업무만을 하라는 것이 되고 만다.

#### 4. 문제해결을 위한 실마리

①각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동일하게 다뤄야 할 것인가의 문제 ②상담소와 보호시설에 대한 신고제와 현행의 엄격한 관리감독 내용이 법 목적에 비추어 그 수단의 선택이 적합한가, 이러한 규제가 피해자들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 모든 상담소를 그 재정적 지원여부에 상관없이 신고제로 규율하는 것이 자발적인 민간의 인권보호 운동을 억제하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③위 ①, ② 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각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하부 행정단위로 생각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④물론, 위 ③항과 관련하여 더욱 근본적으로는 사단법인 등 여성폭력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관리감독이나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

위 ④항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 문제해결의 실마리로서 과거 일본에서 NPO법의 제정으로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들에 대한 규제 완화의 물꼬를 튼 경험을 한 바 있다.

물론, 이는 일본 시민활동단체들의 법인격 취득방법과 관련한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일본에서 행정의 편의만을 위하여 시민사회활동이 위축됨을 거부하고 그 대안의 하나로 이를 획득하였다 는 점에서 일본의 경험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의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일명 NPO법)은 한신대지진 때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제정되었다. 의원입법에 의하여 1998. 3.에 법률이 성립되고 동년 12월에 시행되었으며,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이외의 수입은 비과세이고 기본재산이 불필요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일본의 예를 살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최은순변호사는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사랑과 우정, 그리고 평화만이 언제나 충만한 것은 아니며 그 이면에는 중오와 갈등이 존재하고, 때로는 당사자들의 자율적 조정을 넘어선 분쟁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좀 더 세심한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마인드로 살고 있는 분입니다.

## ※ 워라고라? 신고수가 피해자보다 고통을 더 받았다고라?

S대 정 총장님. 7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피해자의 고통을 인정받았던 사건을 고로코룸 이야기하시다니 정말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그래도 상담소를 비롯한 3개 단체가 함께 입장 표명을 한 후 본인의 심각한 잘못을 깨닫고 백배 사죄를 하셨으니 그나마 다행스럽소잉.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백서'라고 들어는 보셨는감요? 상담소에 있으니 구입하셔서 읽고 공부 좀 하시랑께요.

## ※ 나들이 성희롱의 고통을 알아?

- 1) 야유회를 갔다. 모 부장님이 조 이름을 '젖탱이조'로 하자고 했다.
- 2) "임신하더니 더 뻥뻥해졌네"하면서 모 이사가 임신한 내 가슴을 만졌다.

L호텔에서 일어난 수많은 성희롱 사건들 중 하나.

최근 L호텔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얻기는 했지만 금액은 고작 100만 원에서 300만원 사이란다. 이게~ 이런 껌 값이 보상금이라구?  
니들이 정말 성희롱의 고통을 알아?

## ※ SBS 광짜스토리랜드에서 보여준 꿈픽스토리

경악, 경악, 또 경악. '가해자를 사랑한 피해자들' 이라니. 오락프로그램 만드는데 소재가 그렇게 없더니? 성폭력 피해의 폭력적 상황을 은폐하여 의도적으로 강간 신화를 유포한 죄, 니 죄를 니가 알렸다!! 상담소를 비롯한 3개 단체가 함께 낸 성명서 덕에 결국 방송사가 사과방송을 하긴 했지만 일요일날 잠 잘려고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 분노를 삭힐 길이 없었던 수많은 여성들의 피해보상은 도대체 어디서 받아야 하냐구~요.

## ※ 촛불 하나에 미선이와 효순이의 옷나한 꿈을, 또 다른 촛불 하나에 SOFA 개정의 의지를 담아

퀴즈 하나. 1919년 고종의 인산일 전국 만세운동, 1960년 이승만 독재정권 항의시위, 1987년 6월 항쟁, 2002년 월드컵, 그리고 미선이와 효순이 추모시위의 공통점은?

정답은 광화문.

민족사와 함께 호흡해 온 광화문 네거리에서 밝히는 촛불 하나 하나가 모여 소파 개정의 원동력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 신종 성폭력 유형 등장! 성폭력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액고소했다가 판결 직전에 슬그머니 고소 취하하기.

야들아(D대 모 교수, 모 방송국 노조 간부 등) 언제 철들래? 좋은 머리를 꼭 이런 식으로 써야 하겠냐? 니들은 손해 볼거 없다 이거지? 애들이 배울까 정말 겁난다.

## ★ 이 나라의 절반은 여성, 대선 공약 중 여성정책은 단지 양념.

‘대선 공약’ 비빔밥 요리법

후보 위에 맛나게 요리한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교육정책이라는 재료를 넣고 일단 섞는다. 다른 후보 비방문구도 표나지 않게 살짝 쳐둔다. 여성정책은 간 볼 때 살짝 넣는다.

## ★ 연아가 참으로 불쌍타...

성현아 누드집 소동을 보면서 너무나 씁쓸. 남자 연예인들은 똑같이 마약 하고도 벼젓이 방송에 잘만 나오더구만 여자 연예인들은 재기를 위해 왜 옷을 벗어야하는 건지.

계약금도 못 받는(본인은 안 받았다고 주장은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몰라) 부당한 조건 속에서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새출발”을 다짐하며 누드 사진들을 찍었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그녀가 못내 마음에 걸린다.

## ★ 성폭력 피해 보도 행태에 경종을 울리다!!

성폭력을 당하고 여러 번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도 괴로운데 사건기록을 보고 무작정 경찰서로 찾아와 카메라 들이대었던 여러 방송 관계자 분들! 앞으로는 조심하셔야 될걸요. 상담소의 문제제기로 인하여 피해자인 청소녀를 보호자의 동의없이 인터뷰하고, 동네 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여러 번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가족의 모자이크 처리나 음성변조가 미비했던 MBC 방송국의 뉴스와 ‘아주 특별한 아침’ 프로그램이 방송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거든요. 취재하러 와서 항상 내용보다는 그림(?)에 더 신경 쓰시던 여러분, 앞으로는 피해자의 보호가 가장 우선이라는 거 이제 아셨죠?

전 방송사는 성폭력피해 보도시 보도지침을 수립하라, 수립하라, 수립하라!!!



## 나는 행동한다

성차별, 성폭력 없애는 간단하면서도 꼭 필요한 일

- ① 여성 차별하는 내용, 성폭력적인 내용의 영화, 드라마 보지 않기, 보겠다는 사람 말리기
- ② 호주제 철폐 시민모임에 가입하기([www.no-hoju.women21.or.kr](http://www.no-hoju.women21.or.kr))
- ③ 나의 사소한 행동이 남에겐 폭력적이지 않은지 자기 점검하기
- ④ 성차별적 드라마, 뉴스에 대해 관련 방송사 인터넷사이트에 항의글 올리기
- ⑤ 성폭력추방운동단체 후원하기
- ⑥ 성폭력피해시 기본적인 대처방안 알고, 주변사람에게도 알려주기([www.sisters.or.kr](http://www.sisters.or.kr))
- ⑦ 회식, 뒤풀이를 모두가 즐거운 자리로 만들자고 회사에서, 동아리 안에서 제안하기

## 당신을 만나는 기쁨 |

• 금 2월 27일 E 3월 4일 수 3월 11일 목 3월 18일 금

### 이효숙(본 상담소 보호시설 열림터 부장)

**새** 벽, 밥을 푸며 아이들을 모이게 하는 선생님, 눈을 비비며 욕실로 뛰어들어가는 친구, 이 불을 정리하는 친구, 교복차림으로 현관에서 신을 신고 인사하는 친구, 또다시 <열림터>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식구들이 모두 나가고 나면 말없이 식구들의 뒷정리를 하는 큰언니.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홍얼홍얼 노래를 부르며 주섬주섬 빨래감을 모아 세탁기로 향한다. 얼마 전 '어느 누구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 좀 해 달라, 내가 갈 곳이 어디인지 알려 달라'며 몹시도 초췌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았던 그녀였다.

그녀는 어렸을 때의 기억을 전혀 떠올리지 못한다. 아니, 기억을 갖고 싶지 않아 지워버리려 갖은 애를 써왔음에 지금은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단다. 그녀는 현재의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어떻게 이곳에 오게되었는지, 그러나 그녀는 항상 자신이 믿고 의지할 곳이 어딘가에는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혹시나 하고 이곳 <열림터>를 찾았단다. 어린 자신에게 서서히 다가온 검은 손, 아버지의 두껍고도 매서운 그 손은 점점 깊게 다가와 그녀의 온몸을 만신창이로 만들었고, 두 눈을 꼭 감은 그녀는 마음 속 깊이 두 손을 모아 아픔의 시간이어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였다. 지금 지긋지긋한 그 곳으로부터 탈출에 성공한 그녀는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동생들과 한 식구로 자리잡고 있다.

오후 4시가 되면 또다시 바빠지는 그녀, 대문을 열어주면서 현관에서 식구들을 맞이하는 그녀, 활짝 웃으며 '언니, 오늘 뭐했어? 배 고프다. 언니 우리 간식 먹자!' 숨이 넘어가게 마구 물어보는 아이에게 멋쩍게 웃으면서 아이를 반겨준다. 처음의 그녀는 하루종일 한 구석에 앉아 눈치를 살피면서 자신의 어색함을 달래곤 했다. 그러면서 다른 식구들의 아픔을 알게되었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이야기임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편하나? 중오스럽지 않나? 웃음이 나오나?'며 반문을 하던 그녀였다. 함께 생활하면서 그녀는 서서히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본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하루가 되리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과일 바구니를 들고 거실 가운데로 온다. 아이들은 우루루 그녀의 주변에 앉아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두서없이 마구 쏟아낸다. 그녀의 얼굴은 흐뭇함으로 가득하다.

우리 집은 지금 웃음꽃이 한창이네요. 내일은 아주 멋지고 단단한 열매를 맞이하게 되겠지요.



※ 따뜻한 인상으로 항상 상담소, 열림터를 밝히는 분, 이효숙님은 열림터 아이들을 특히나 아끼고 사랑한다.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 뿐 아니라, 차후에 스스로의 삶을 당당히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오늘도 분주히 하루를 보내고 있다.

## 당신을 만나는 기쁨!!

○ 人 人 人  
己 人 人



● 심창교(본 상담소 2기 상담원, 항공대 강사)

**우** 리 집 앞의 논도 어느덧 추수를 하고 대머리를 드러내었다. 도시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 나는 아침저녁으로 그 광경을 즐기고 있다.

이 가을이 지나면 정말로 50대로 접어드는구나..

늙어 가는 것이 좋을 리 없지만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여유가 생긴다. 이제부터 하는 모든 일들은 정말로 좋아서 어떤 욕심 없이 할 것 같아서.

모처럼 상담소 식구들과 얘기하고 헤어져 오면서 10년 세월이 지났음을 실감하였다. 지난 시절을 돌아보면, 92년 상담소에서 처음으로 교육을 받고 상담을 하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사실 그것은 어쩌면 미리 예고된 것이기도 하였다. 한 집안의 가정주부로서 심하게 가슴앓이하며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왜 안 그러하겠는가?

나는 전체 사회의 모순에 부딪히며 살아 온 것 같다. 이 나라에서 여성으로 살기란, 특히 우리 세대에 한 인간이 아닌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울분을 삼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우리는 삶의 주인공보다는 언제나 보조역할을 해야만 했다. 머리는 될 수 있는 한 명청하게, 알면서도 모른 척 살아야 하는 현실이니까.

결혼제도는 여성을 여성 스스로도 무기력하게 현실에 타협하도록 길들이고 있다. 즉 여성 스스로가 여성 힘들게 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능력은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결혼한 후, 배우자와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런 작은 일에 도전하였고 굽히지 않았다. 힘없이 주저앉아 있어도 마음속으로는 내가 항상 옳다고 외쳐 대었다. 나에게 있는 끈기와 고집과 강함은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 나만의 세계다. 여성과 남성을 떠나 한 인간으로 살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고, 나는 여성이기 때문에 그 욕망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성폭력상담소에서 수많은 사연과 일들이 있었지만,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의 혁명은 성의 문제가

## 당신을 만나는 기쁨!!

얼마나 왜곡되게 우리를 괴롭혔는지를 안 것이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조금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도 큰 변화이리라. 성폭력 상담소에서 드러나는 성의 문제는 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였다. 나는 이런 문제를 비판하고, 울분을 토할 수 있는 상담소가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특히 상담을 할 때는 왜곡된 사실 앞에 분노도 하고 통쾌하게 비판도 하면서, 나 자신이 갖고 있던 신념을 확인하는 순간들도 있었다. 성의 문제가 개인여성과 개인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힘의 논리로 형성되어 있어서 그 고리를 끊고 일어선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자신이 올바르다는 신념을 버린 적이 없었다. 여성의 보이지 않는 힘이 얼마나 큰일을 일구어 내는지 나를 통해서도, 내 주변의 자매들을 통해서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상담소를 알게 된 후 또 다른 변화는 가족 안에서 성, 성폭력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이야기하게 된 것이다. 아들이 커가면서 별도로 성교육을 한 것은 아니지만, 성에 대한 이야기. 여성의 차별하는 현실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내 아이는 성이 숨겨야 할 무언가 아니라 삶의 일부분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 같다.

남들이 보기엔 낯부끄럽다(?)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난 내 아들세대와 소통하고 있음을 느낀다. 나에게,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성을 이야기하고, 성폭력과 차별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해준 상담소가 지금도 참 고맙다.

10년이 지난 지금, 맘속으로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상담소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으로 커나가는 것이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에 대해 멋떳이 이야기하고, 이 안에서 치유를 꿈꾸며 자신의 미래를 알차게 펼칠 수 있을 만큼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모처럼 지난 날 같이 일했던 상담원들을 만나면서 오랜만에 동지를 찾은 느낌이었다. 역시 우리들은 다르다는 느낌?! 어쨌든 앞으로도 밤새워 얘기 할 수 있는 날이 많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10년 세월은 혀되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 일산 신도시에 살고 있으며, 그동안 인간의 성에 대해 왜곡되어 온 부분에 대해 대학에서 강의해 왔습니다.  
앞으로 삶에 대해 열정을 가진 분들과 남은 우리의 삶을 연구하며 나누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 1. '인터넷을 이용한 성폭력상담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10월 18일(금)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성폭력상담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성폭력 상담의 중요성과 문제점, 앞으로의 과제 등에 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 2. 유아대상 성폭력예방비디오 '내 몸은 내가 지켜요 II' 시사회



12월 3일(화) 유아대상 성폭력예방비디오 '내 몸은 내가 지켜요 II' 시사회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가졌습니다.

이날 시사회에는 신당 1동 어린이집 원아 10명이 나와서 비디오에 수록된 곡을 율동과 함께 불러 행사를 빛내주었습니다.

80여명이 참석한 이날 시사회에서는 '내 몸은 내가 지켜요 II' 비디오와 이 비디오를 활용하여 실시한 성폭력예방교육 영상물을 함께 상영하였고 시청 후 짧막하게 나마 서로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 3. 상담소 지하와 열림터 새단장

11월 중에 상담소 지하와 열림터 공사가 있었습니다. 지하 공간 중 일부 벽을 터서 내부 행사(총회, 한 해 보내기 등) 및 집단 상담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넓은 장소를 마련하였고, 자료실에는 도르래 책장들을 마련하여 방대한 자료들을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열림터는 작은 방 1개와 화장실이 추가로 만들어져 입소자들이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사는 대안건축 '자연을 담은 집'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미처 요구하지 않았던 부분 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고,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 주신 '자연을 담은 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4. 한해보내기



2002년 한해를 돌아보고 2003년의 활기찬 활동을 기약하는 상담소의 한해 보내기 모임이 12월 18일 상담소의 모임터에서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는 상담원, 이사, 자문위원, 내담자, 열림터 식구들, 이전에 활동했던 활동가들, 상담원 선생님의 딸과 아들, 상근자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신나는 게임과 퀴즈, 재미있는 벼룩시장과 경매를 하면서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모임의 열기는 2003년의 신명나는 활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 요즘 어뻐세요?

- 열림터의 야간을 맡아 주셨던 백정선 선생님이 가시고 새로운 이상미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음주 가무. 나이트. 젊음을 접고 열림터의 밤을 챙겨주심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 전 상담소 사무국장이었던 문효진 선생님이 한 순등남과 혼인식을 올리셨다네요. 평소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뜬~소문이 있었다 하는데. 초심으로 언제나 행복하시길...
- 상담소의 장윤경 선생님이 드디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평생의 짹지 '개구리 왕자' 와 혼인식을 했답니다. 오래오래 이쁘게 사랑하라고 모두 한마디씩 던져주세요~
- 상담소 상담부의 큰언니이신 조중신 선생님이 2003년 2월부터 6개월간 휴식의 시간을 가집니다. 포천 중문의대 보건대학원 의료복지 석사과정을 이수하면서 열씸히 재충전을 하신데요
- 야간상담을 사수했던 이덕화 선생님이 2003년부터 상담부 간사로 상근하게 됩니다. 주위의 압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큰 결정을 내리심 감사하구요. 오래도록 함께 했으면 합니다.
- 과거의 지킴이가 오늘의 상근자가 되다. 김보연 선생님이 이대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성폭력관련 여성정책으로 논문을 쓰고 2월부터 함께 하게 됩니다. 너무나 든든해지는 이 기분~
- 심창교(2기) 선생님이 서울여대 사회사업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셨습니다. 축 하드려요~
- 이해웅(17기) 선생님이 이대 여성학과 대학원 입학과 함께 화려하게 컴백하셨답니다~
- 권해수(상담자문위원) 선생님이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에 관한 박사논문을 완성하고 이도 모자라 회임까지 하셨다 하네요. 이런 경사가 겹치다니~ 조심히 조심히 걸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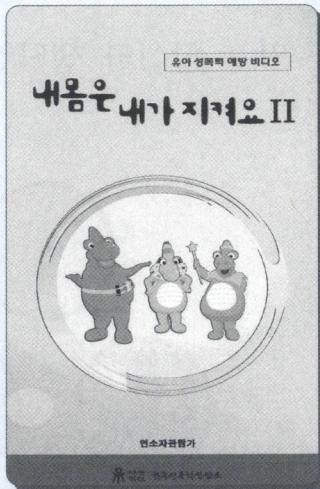
## 신간 비디오 소개

유아대상성폭력예방비디오”내 몸은 내가 지켜요II”가 나왔습니다.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받았던 “내 몸은 내가 지켜요”(1993년 제작)의 뒤를 이어 유아대상성폭력예방비디오 “내 몸은 내가 지켜요II”가 새로 제작되었습니다.

미성년 가해자가 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또래에 의한 성폭력 사례들이 많이 삽입되었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 율동이 가미된 노래 4곡과 애니메이션 등을 넣어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이 비디오를 활용하여 교육하실 수 있는 성폭력예방교육모델과 수록곡의 악보 등이 담긴 소책자도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 ◆ 대상: 5세~7세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가능)

- ◆ 시간: 28분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1부 - 좋은 느낌, 싫은 느낌

2부 - 소중한 나의 몸

3부 - 싫다고 말해요

- ◆ 가격: 2만원(우송료 포함) 구입문의: 02-338-28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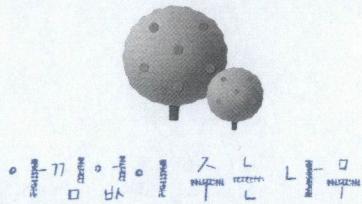


## 당신의 관심을 보여주세요~

회원님들께 저희의 소식을 온라인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해 드리고자 조금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자, 단 1분만을 투자하시면 상담소의 소식을 안방에서 무료로 평생 즐길 수 있습니다.

오른손 또는 왼손을 이용하여 ☎와 접촉한다 ☎338-2890을 꾹꾹 누지른다 ☎상담소의 상근자와 내통(?)한다 ☎ 자신의 메일주소를 또박또박 말한다 ☎ 임무 끝. 보여주실꺼죠? . .





진정 쓸 줄 아는 당신이 챔피언~ !!!



## 당신의 작은 기부가 세상을 바꿉니다

學如牛毛，成如麟角

배우는 사람은 소털처럼 많아도  
이루는 사람은 기린의 뿔처럼 적은 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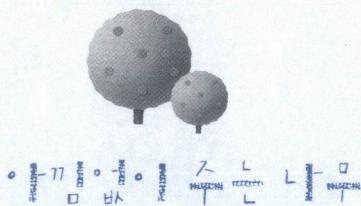
- 太平御覽에서 -

일원, 오원, 십원, 백원, 오십원, 오백원 이쁜 동전들을 열심히 찾아내었습니다. 이미 때 지난 동전들도 흐뭇하게 웃으며 봅니다. 동전이 요즘처럼 기특하고 요긴하게 느껴진 때는 드물었습니다. 야광색 돼지 저금통 속에서 요란스런 소리를 내는 그 동전들.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나의 일상과 삶의 철학을 오롯이 담아내는 그릇만 같습니다. 나의 시간과 돈을 즐김 속에 투자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분명 자신이 존중하는 일일 것이고, 사랑하는 일일 것입니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가고, 오래가면 살아남는다 합니다.

우리의 열정이 흐르는 시간 속에 묻혀버리지 않았음을, 녹녹한 세상 속에 무뎌지지 않았음을 그리하여 변화될 세상을 언제나 꿈꾸고 살아감을. 자신에게 보여줍시다. 꽤 팬찮은 일이겠죠? . . .





### 새로 오신 (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 ^

권기만	김금란	김미라	김민규	김병숙	김성신	김학훈	남기태	남영옥	박준이	배미정
손경희	안형윤	우순영	이상미	이어진	이은애	장재정	전영숙	정문영	정은선	최선규
허준복										

8월부터 11월까지 (후원)회비를 내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원	강남식	계경문	고계영	고규선	고금이	고영석	고정남	고진규	고혜순	구나은
구민지	권경희	권기만	권순남	권주희	금철영	길종성	김강자	김경선	김경현	김경희
김덕명	김동희1	김동희2	김돌순	김미경1	김미경2	김미라	김미숙1	김미숙2	김미옥	김민규
김삼화	김선민	김선애	김선택	김성득	김성신	김소명	김소연	김순자	김순형	김언정
김엘림	김연희	김영서	김영숙	김영애	김영정	김옥선	김용관	김용자	김원희	김월순
김윤경	김은경	김은미	김은정	김웅진	김의창	김이윤상	김인숙	김일륜	김재원	김정희
김주희	김준호	김지선	김지연1	김지연2	김지윤	김진만	김진희1	김진희2	김찬균	김하연
김해경	김현란	김현수	김현식	김현정	김현수	김혜경	김혜련	김혜숙	김혜원	김혜정
김화영	김효선	김후자	김홍식	김희경	남기태	남영옥	남현미	노미순	노주희	니콜라
도순아	류수진	류승훈	맹주현	문효진	민웅기	민현경	박귀자	박미경	박미영	박미향
박민주	박병현	박부자	박선희	박성근	박소연	박소영	박순복	박신옥	박신정	박은숙
박정옥	박정희	박준규	박지영	박지현	박진성	박진숙	박찬운	박찬혁	박창은	박현주
박혜영	박혜진	배은경	배희진	상묵스님	서명선	서미현	서민자	서성준	서정표	설연자
성시녀	성시녀	성은주	손명숙	손수경	손이전	손종성	송문숙	송성애	신경선	신동한
신동현	신상숙	신성희	신숙희	신은주	신정혜	신희경	심경미(suns 30대 싱글모임)	심수희(김인옥)		
심창교	심혜련	안형윤	안홍례	양 영	양애경	양연주	여영자	오한숙희	오유지	오은순
오태형	오희선	오희옥	원형섭	유경숙	유숙영	유은주	유인숙	유현광	육향순	윤명화
윤선희	윤숙경	윤양현	윤양현	윤영미	윤정희	윤지원	윤형옥	이경룡	이경미	이경애
이경은	이규화	이근혜	이근혜	이나미	이내화	이대영	이덕화	이명선	이명숙	이명자
이미정	이민영	이민희	이백수	이상근	이상은	이석민	이선숙	이성수	이성영	이성제
이수자	이순례	이순순	이어진	이영분	이영표	이옥희	이윤선	이은미	이인자	이재인
이정아	이종란	이종환	이춘미	이푸른매	이해옹	이현숙	이혜경	이혜숙	이호숙	이호진
이효숙	이희영	이희화	임복선	임순영	임자영	임종은	임주희	임홍섭	장미숙	장윤경
장철우	전경립	전민숙	전연배	전영숙	전유경	전홍석	전희진(김환수)		정경란	정교화
정금자	정남운	정대현	정문영	정미경	정신애	정영석	정영선	정옥실	정유석	정유순
정은숙	정인희	정한수	정현주	정호성	조소연	조순희	조인옥	조정숙	조중신	조현미
주남숙	주명희	지인순	지인순	차옥덕	채지수	천정환	최경식	최금희	최기홍	최동석
최명현	최보원	최양렬	최연옥	최영숙	최영애	최옥경	최용득	최은경	최은미	최은순
최정복	최정운	최지녀	최혜숙	하은주	하일호	한기모	한보경	한상희	한은희	한재철
허나윤	홍만희	홍보연	홍성복	홍순기	황성기	황재호				

평생(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상담소를 아끼는 마음 감사합니다. ^ - ^

강정자	고정남	니콜라	변혜정	이명선	이미경	이병규
-----	-----	-----	-----	-----	-----	-----



본 상담소심벌은 여성을 나타내는 우가 3개모인 것으로, 이는 여성들이 손을 잡고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힘을 모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양쪽의 비스듬한 다리모양은 피해여성의 자립을 위해 여성들 스스로가 서로의 베풀목이 되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벌의 색깔은 '여성'과 '자매'를 상징하는 자주색입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런 곳입니다.

1991년 4월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이래 본 상담소는 지금까지 3만 7천여 회의 성폭력피해자들과의 법적·의료적·심리적 상담을 통해 내담자들이 피해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였으며, 성폭력의 원인 및 예방 대책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인간중심적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켜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인 부설(열린터)에서는 성폭력 피해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의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외부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소에서는 성폭력 예방과 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외부 강연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직장내 성희롱” 관련법의 제·개정으로 각 기업 내 강연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강의 주제

성폭력 실태와 예방/ 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어린이 성폭력/ 직장내 성희롱/ 학내 성폭력 예방 및 성문화/ 성교육 지도자 교육/ 자녀 성교육 지도/ 유형별 성폭력 상담 방법

※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본 상담소에서는 강의와 더불어 상담소에서 제작·판매하고 있는 비디오를 함께 시청하고 토론하는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의 의뢰 문의 : 김언정 사무국장/ ☎ (02) 338-2890~2

##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성폭력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으로, 인권에 대한 유린행위입니다. 성폭력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함께 풀어갈 수 있습니다.

■ 상담·열린터 입소문의 : ☎ (02) 338-5801~2

■ 인터넷 상담 : ksvrc@chol.com

- **이사장** 김삼화 ■ **이사** 김삼화 김영권 문혜란 박찬운 이명숙 이미경 이백수 장철우 최영애 최보원 최은순 홍순기 ■ **감사** 회계사/배자하 세무사/차재승 ■ **자문위원** · 교육 교사/김성애 차옥덕 교육학/김인수 정유성 현기섭 문화인류학/정병호 저널리스트/박미라 윤리교사/백영애 청소년교육/이규미 · 법률 법학/한인섭 변호사/강기원 고순례 김삼화 김의창 남성렬 박성호 박찬운 손명숙 이명숙 이백수 이유정 이향아 임종인 장경호 장철우 정성광 정연순 최은순 최현희 경찰/김강자 이금형 · **상담** 정신보건사회사업가/오현숙 목회상담가/이재훈 임상심리상담가/전양숙 상담심리학/권해수 김순진 김정규 이윤로 이장호 이해성 장연집 정남운 사회학/장영복 사회복지학/이영분 이원숙 한인영 · **의료** 가정의학/김종구 정영숙 법의학/강신봉 권일훈 문국진 서중석 이경룡 이윤성 최영식 황적준 비뇨기과/이유식 이윤수 산부인과/김주필 김현식 김홍배 문영규 민용기 박금자 박종민 손인숙 안명옥 윤경 윤연정 이길여 이신애 이옥주 임용택 정경원 조삼현 조정현 최보원 홍순기 성형외과/정영덕 소아정신과/소은희 신의진 최보문 임태식 외과/오세민 주수호 예방의학/이용호 응급의학/원형섭 임상병리학/강정옥 문혜란 정신과/김광일 김병후 김정일 남정현 박수용 박진생 양창순 유재혁 이해련 이호석 윤영민 이수경 전지홍 조맹제 최진숙 치과/이상엽 한의학/강명자 김영선 김효선 서은미 이은미 호흡기내과/안철민 · **재정** 프리랜서/여난영 회계사/배자하 임종은 · **정보사업** 통신/김형준 윤영민 · **홍보출판** 신문방송학/김웅숙 최선열 언론인/전여옥 여성학/박혜란 오숙희 연극/김지숙 출판/권혁건 이인자 PD/고학찬 조소/홍성도 · **21세기여성·미디어운동센터** 공동위원장/박정순 지문위원 신문방송학/강남준 강명구 김영희 김훈순 원용진 전석호 논설위원/지영선 ·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소장/변혜정 사회복지학/권진숙 이원숙 사회학/김준호 심영희 여성학/김은실 이재경 장필화 조주현 임순영 철학/이상화 정대현 이동복지학/장화정 청소년연구원/김선욱 김엘림 신용자 사회심리학/김혜원 사학/박진숙 ■ **부소장** 장윤경 ■ **소장** 이미경